지속위 자료집 2004-12

대 외 주 의
/ 3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활동자료집(2004. 5. 25)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PCSD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차 례>

요약 ····· 1
1.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구성 및 활동배경 ····· 2
2. 활동내용 ····· 2
1) 지속위의 조정역할과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 2
2) 준비단 활동에 관한 자체지침 정립 ····· 3
3) 관련당사자 선정문제 결정 ····· 3
4) 관련당사자 대표와 지속위가 참여하는 조정회의체의 명칭 및 구성 결정 ····· 3
5) 관련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준비절차 추진 결정 ····· 3
6) 주요 쟁점사항 및 찬·반 주장의 요지 파악 ····· 4
7) 대안에 대한 검토 추진 ····· 4
8)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입장 정립 ····· 5
9)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확정 ····· 5
10)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언론홍보 실시 ····· 5
11)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정부·환경단체 설명회 개최 ····· 6
12)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주민설명회 개최 ····· 6
13)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발족 ····· 7
3. 향후 추진계획 ····· 7

부록
부록1: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회의록 (1차~13차) ····· 8
부록2: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회의별 회의자료 (1차~13차) ····· 22
부록3: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보도자료 ····· 169
부록4: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설명회 개최결과 ····· 170
부록5: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주민설명자료, 리플렛, 사진자료 ····· 173
부록6: 한탄강댐관련 자료목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실 비치) ····· 195

요약

1. 한탄강댐 갈등관리 추진배경 및 경과
. 대통령께서 '03. 12. 19 강원도민과 대화시 갈등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납득가능한 결론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맡아서 도출할 것을 지시
.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구성('04.2.17)
.. 정진승 위원(단장), 김경, 박수선, 이선우, 이영희, 허상수 위원
. 준비단 회의 13회 개최
.. 준비단 활동계획 수립, 사업반대측 전문가·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건교부(수자원공사) 관계자·환경운동연합·찬반 주민대표 의견청취 및 현지답사 실시,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및 관련당사자 대표자회의를 주관할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논의·결정

2. 주요 쟁점
. 제방 증축, 방수로 건설 및 임진강 본류댐 건설 등 대안을 둘러싼 논란
. 홍수량산정과 홍수조절효과 관련자료의 정확성 여부
. 한탄강댐 건설시 인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홍수피해 가중 여부
. 다락대사격장으로 인한 환경 및 댐 안전성 여부
. 댐의 경제성 및 기초지반 부실 여부, 추진절차상의 문제점 등

3. 주요 결정사항
. 갈등조정소위원회는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 조정활동의 범위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방안까지로 함
. 댐건설 찬성측과 반대측 각 2개 그룹을 관련당사자로 함
. 조정절차는 ①주민설명회 및 언론홍보, ②관련당사자 대표자 선정, ③관련당사자 대표자 합동워크샵 개최, ④협상원칙 결정, ⑤조정회의 개최 등 조정활동 수행, ⑥합의도출 및 대통령 보고 등으로 함
. 준비단 위원이 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관련당사자 대표자회의에서 박수선·이선우·허상수 위원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함

4. 향후 추진계획
. 관련당사자 대표자 선정, 워크샵 개최: 5월중
. 관련당사자 대표자회의 운영원칙 결정 및 본격적인 조정활동 수행:6~8월
.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 및 대통령 보고

1.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구성 및 활동배경

. '96, '98, '99년, 파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지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정부에서 '99.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

. 그러나 댐 건설에 대해 찬·반 여론이 갈라져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서 '03. 12. 19일 강원도민과 대화시 대통령께서 갈등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납득가능한 결론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맡아서 도출할 것을 지시

> "한탄강댐 건설의 재검토는 가능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최종결론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옳던 그르던 승복할 수 있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임. 한탄강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조정프로세스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할 것"

. 이에 따라 한탄강댐 갈등관리 추진계획 보고('04. 2. 12, 제38회 국정과제회의시)

..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하여 갈등해결 프로세스 마련 후 '한탄강댐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당사자간 협상·조정 프로세스 진행

.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구성('04. 2. 17)

.. 단장: 정진승 위원

.. 준비위원: 김경, 박수선, 이선우, 이영면, 이영희, 허상수 위원

... 이선우, 이영면, 이영희, 박수선 위원은 프로세스 디자인팀원으로서의 활동 병행 수행(팀장: 이선우 위원)

... 일신상 이유로 이영면 위원 사퇴('04. 2. 26)

2. 활동내용

. 총 13차에 걸쳐(매주 화요일) 정기회의 개최

. 주요쟁점, 관련당사자, 조정절차, 조정원칙 등에 관해 토론

.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 언론 및 주민홍보

. 지속위 갈등조정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일정 등 확정 후 준비단 해단

1) 지속위의 조정역할과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활동종료 후 관련당사자 대표들간의 조정회의를 이끌어 나갈 지속위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는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자의 역할 수행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경우 지속위의 조정 활동 결과를 이해당사자의 일방이 수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한탄강댐 건설 여부에서 나아가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방안으로 이슈의 범주를 넓혀서 조정활동 수행

2) 준비단 활동에 관한 자체지침 정립
.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준비단 내부에서의 결정사항은 전체 참여위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
.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대외비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속위 위원장 및 준비단장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외발표를 하도록 함

3) 관련당사자 선정문제 결정
. 댐건설 찬성측: 건교부(수자원공사)와 찬성주민 대표(포천·연천군 수몰민 대책위원회 등) 2개 그룹으로 구분
. 댐건설 반대측: 반대주민 대표(철원·포천·연천군 대책위원회 등)와 중앙환경단체(한국환경회의, 댐반대국민행동 등) 2개 그룹으로 구분
.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관련당사자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함
. 주민대표에 의한 협상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원칙을 사전에 확립하도록 함

4) 관련당사자 대표들과 지속위가 참여하는 조정회의체의 명칭 및 구성 결정
. 4개 그룹 관련당사자 대표와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명칭을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한탄강댐조정회의)'로 함
. 한탄강댐조정회의에 참여할 대표자는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되,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찬성측과 반대측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준비절차 추진 결정
. 관련당사자가 지속위의 조정과정을 신뢰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탄강댐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위의 역할 및 갈등조정의 의미, 지속위의 중립적 입장 등에 대한 설명회·기자간담회·워크샵 등을 개최하기로 함
. 지속위 기획운영실에서 보도자료 및 리플렛 등 홍보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준비단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6) 주요 쟁점사항 및 찬·반 주장의 요지 파악

. 주요 쟁점사항

.. 제방 증축, 방수로 건설 및 임진강 본류에 댐 건설 등 대안을 둘러싼 논란

.. 홍수량산정과 홍수조절효과 관련자료의 정확성 여부

.. 한탄강댐 건설시 인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홍수피해 가중 여부

.. 다락대사격장으로 인한 환경 및 댐 안전성 여부

.. 경제성 및 기초지반 부실 여부

.. 추진절차상의 문제점 등

. 찬성측 주장 요지

.. 수몰지역 주민 대부분이 댐 건설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일부 반대인사가 정치적 동기로 건교부(수공)와 주민간의 합리적 대화를 방해해 왔음

.. 한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는 물론, 파주에 계획 중인 LG필립스 공장의 안전성 확보, 군사보호구역으로 제약을 받아 온 연천·포천·철원 지역의 관광지역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파괴된 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를 위해서도 댐은 건설되어야 함

.. 댐이 백지화된다면 지역경제 낙후와 이웃공동체 파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임

. 반대측 주장 요지

.. 댐 위주의 수자원정책과 한탄강댐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문제임

.. 임진강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미 임진강 북측에 다수의 댐이 건설되어 있으므로 한탄강댐 건설은 타당성이 없음

.. 댐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음

. 한탄강댐관련 합의적 결론 도출을 위한 지속위의 조정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찬·반 양측 모두로부터 확인함(향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대표 선정 등의 과정에서 재확인 필요)

7) 대안에 대한 검토 추진

.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 한탄강댐 건설 이외의 대안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지속위 기획운영실에서 대안검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함

8)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입장 정립

. 북측에서 건설완료 또는 추진 중인 임진강 본류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엄두용 박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임진강 북측 현지조사에 엄두용 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협력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는 계속 진행하기로 함

9)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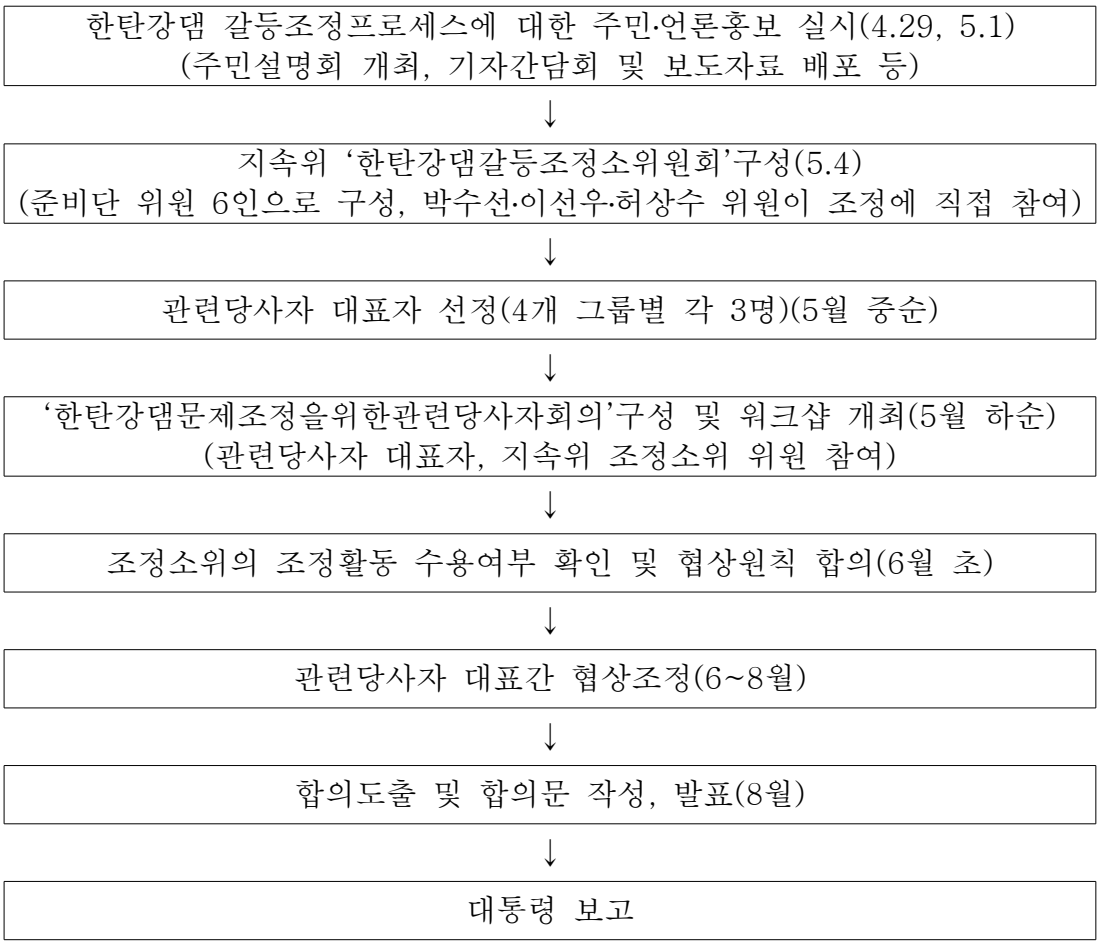

10)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언론홍보 실시('04.4.29)

. 연천군청과 철원군청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정진승 단장)

. 언론사 참석자

.. 연천군청: 기호일보 정동신, 인천일보 강상준, 경기일보 장기현, 경인일보

오연근, 현대일보 윤석진, 시민일보 김항수, 신아일보 김수홍, 아세아일보 염덕열, 경기신문 정대전, 연천신문 이규만, 연천저널 민재정 기자 등 11개 언론사

.. 철원군청: KBS춘천방송, 강원일보 이정국, 강원도민일보 이주섭, 강원북부신문 김순경, 철원신문 변영수, 한중신문 박건국 기자 등 6개 언론사

11)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정부·환경단체 설명회 개최('04.4.29, 10:00)

. 정부 참석자: 소준섭 수질개선기획단 사업지원부장, 홍형표 건교부 수자원개발과장, 수개단 강명수사무관, 건교부 이우제사무관, 황병철 수자원공사 처장, 김한중 과장

. 환경단체 참석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배석자 : 박진우·김수영 행정관

. 주요 설명내용

..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및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의 구성, 프로세스 참여의 의미와 참여에 따른 이점, 앞으로의 조정절차 및 일정 등 설명

.. 주민과의 대화창구는 관련당사자회의로 일원화하며, 주민과의 이면 접촉 및 홍보활동 자제 요청

.. 5월11일까지 대표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

. 질의응답

.. 가급적 8월말까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속위 본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자문

.. 주민대표 선정시 대표성에 유의

12)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주민설명회 개최

. '04.5.1(토) 19:00시부터 연천군민회관(찬성주민)과 철원군청(반대주민)에서 개최

.. 찬성주민 250여명, 반대주민 300여명 참석

. 조정절차 설명

.. 준비단 위원소개 및 지속위의 지위·역할 등 설명

.. 그간의 추진경과 설명

.. 갈등조정절차의 개요,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구성, 합의절차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조정프로세스 설명

.. 5.11일까지 주민대표 선정요청 등

. 질의응답

.. 찬성주민 설명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은 댐 건설문제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

.. 반대주민 설명회는 정부의 댐 건설정책에 대한 불만과 조정절차에 대한 회의적 견해 표출 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의 설명회 진행방해 시도가 있었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음

13)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발족

. 준비단 구성원이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로 함

. 박수선·이선우·허상수 위원이 '조정위원'의 자격으로 한탄강댐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갈등조정활동을 수행하기로 함

· 조정위원 중 허상수 위원은 한탄강댐조정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박수선 위원과 이선우 위원은 한탄강댐조정회의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가 수행할 업무 확인서에 소위원회 위원들이 서명 완료함으로써 준비단 해단 및 갈등조정소위원회 발족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기로 함

3. 향후 추진계획

. 관련당사자 대표 선정, 워크샵 개최: 5월중

. 제1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조정회의의 원칙 결정: 6월초

. 본격적인 조정활동 수행: 6~8월

. 관련당사자간 합의 도출 및 대통령 보고

<부록1>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회의록(1차~13차)

1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2.17(화) 12:00~14:30, 혜화동 소재 음식점 함춘원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이선우, 이영희, 박수선, 허상수 위원(갈등관리준비단),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고철환 위원장, 김경욱 행정관(참관)

3) 주요 안건 :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의 향후 활동방향 논의 및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사례 청취

4) 토의 및 결정사항

. 한탄강댐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매주 화요일 16시에 회의를 개최하되, 제2차 회의는 시간관계상 2004. 2. 26(목)에 개최하기로 함

.. 2004. 2. 26(목) 16:00, 이상헌 박사 등 사업반대측 입장 청취

.. 2004. 3. 2일(화) 16:00, 건교부 등 사업추진측 입장 청취

.. 2004. 3. 9일(화) 16:00, 환경영향평가서검토기관(KEI)의 견해 청취

※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그룹 파악노력 병행

. 갈등관리준비단의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Ground Rule 공유

.. 참여위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단장이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가급적 만장일치에 이를 수 있도록 함

.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언론, 이해당사자 등 대외발표 관련

.. 비밀 엄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지속위 위원장 및 준비단장이 대외창구 역할을 함. 참여위원의 개별적 대외발언은 자제되어야 함

.. 준비단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합리성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준비단의 입장과 활동배경을 지속위 홈페이지에 게재(위원장 제안)

.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지역시민사회와의 갈등조정과정 및 교훈, 정책협상 사례(팔당호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정진승 단장)

. 행정적 지원사항 논의

.. 회의록 등 관련기록의 철저한 작성·관리, 준비위원에 대한 행정지원 준비

회의자료: 정진승 단장 발표자료

. 정책협상(팔당호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 팔당호대책 수립과 지역시민사회와의 갈등조정과정

. 특별대책수립 추진일정

2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2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2. 26(목), 16:00~20:3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박진우 행정관(참관) 최형지 강원도의원(양구군),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반대측 관련자)

3) 주요 안건 : 준비단 작업계획(안) 검토 및 댐 건설 반대측 의견 청취

4) 토의 및 결정사항

. 정진승 단장이 작성한 준비단의 향후 작업계획(안)에 따른 위원별 검토 과제 결정

.. 이해당사자 파악 및 예상 문제점·대책 검토: 허상수 위원

..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도방안 검토: 박수선, 이영희 위원

.. Ground Rule(협상 원칙) 작성: 이선우 위원

.. 조정 진행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과 대책 검토: 김경 위원

. 준비단의 향후 활동계획 결정

.. 2004. 3. 9(화):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위원 의견 청취

.. 2004. 3. 16(화): 건교부·수자원공사 등 정부측 입장 청취

.. 2004. 3. 20(토): 현지답사(지속위 행정팀에서 준비)

.. 2004. 3. 23(화): 위원별 검토과제 토의

.. 2004. 3. 24~30일 중: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에 경과보고(일자는 미정)

.. 2004. 4. 12(월): 조정위원회 구성

※ 매 회의시 준비단의 작업내용 검토 및 토의 병행

. 일신상 사유로 인한 이영면 위원의 준비단 탈퇴 확인

. 댐 건설 반대입장 청취

.. 최형지 의원: 강원도에 댐을 건설하는데 대한 근본적 반대 입장 설명

.. 최석범 소장: 한탄강댐 건설의 기술상·절차상 문제점 설명 및 대안 검토 필요성 제시

회의자료 : 최석범 소장 발표자료(한탄강댐 추진상 문제점)

. 한탄강댐 갈등조정 작업계획(안)

3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3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3. 11(목), 16:00 ~ 19:2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송영일 환경영향평가부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3) 안건: 준비단 작업추진상황 점검 및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전문가 의견 청취

4) 토의 및 결정사항

. 준비단의 활동계획에 대한 위원별 검토과제 점검

.. 각 위원들이 맡은 분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제4차 회의(3.23)시 논의키로 함

. 현장답사('04. 3. 20) 관련사항 논의

.. 답사시 공개적으로 건교부 관계자 및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본격적인 갈등조정프로세스가 진행됨을 의미하므로 준비단 단계에서는 자제하기로 함

.. 따라서 준비단의 자체 현장확인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되, 현지에서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중립적·객관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엄두용 or KEI)의 도움을 받기로 함

.. 답사일정의 연기가 논의되었으나 준비단의 활동시간이 많지 않고 향후에도 답사가 가능하므로 1차 답사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함

.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송영일 KEI 환경영향평가부장의 설명 청취

..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홍수·생태·토양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경제적 타당성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아니므로 제외)

. 기타 논의사항

.. 갈등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배포하기로 함(대외주의 자료임)

.. 댐 건설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제공키로 함

회의자료: 송영일 부장 발표자료(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4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4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3. 16(화), 16:00-19:3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전병성 수자원국장, 홍형표 수자원개발과장, 박재현 서기관(건교부), 황병철, 김만기, 김한중(수공)

3) 안건: 현지답사 일정 확인 및 준비단 작업추진상황 점검,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건교부 의견 청취

4) 토의 및 결정사항

. 위원별 준비과제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 사업자측과 반대측간 쟁점사항은 현지답사(3. 20일) 전까지 엄두용

박사가 정리

.. 이해당사자 파악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영희 위원이 허상수 위원을 지원하여 준비

..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도방안 작성(박수선 위원)에 있어 중앙시민단체의 당사자 포함 여부를 차기회의에서 좀더 논의

.. 협상원칙, 이해당사자 선정 등에 대한 그간의 검토사항을 제5차 회의(3.23)에서 본격 논의

. 현지답사 일정계획은 지속위 기획운영실에서 작성한대로 추진키로 결정

. 한탄강댐 건설사업자(건교부·수자원공사) 의견 청취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남북경협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원활치 않음

.. 한탄강댐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는 사실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임. 홍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였으나 한탄강댐건설이 가장 적합함. 중단될 경우 국가정책의 신뢰성이 추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의견 청취

회의자료: 건교부 설명자료

5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5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3. 20(토), 09:00~19:00, 한탄강 상류 및 댐건설 예정지 등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3) 안건: 한탄강 일원 답사 및 주요 쟁점사안 검토

4) 답사 경로 및 주요 결정사항

. 답사 경로: 지속위 → 철원 고석정 및 수몰지 상류부 → 고문리 댐건설 예정지 → 다락대 사격장 → 한탄강과 영평천 합류부 → 문산천 일원

. 한탄강댐 관련 쟁점사항 정리자료(엄두용 박사 준비)를 '04.3.23(화) 제6차 회의에서 별도 검토·논의키로 함

. 철원지역 주민의 주된 반대 사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 내수배제 지연으로 인한 홍수피해 가중 여부, 차후 용수공급 가능토록 전환될 우려 등

.. 한탄강네트워크의 문제제기 사안

..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효과문제

.. 다락대사격장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오발사고로 인한 댐의 안전성 문제

.. 제방 증축 및 방수로 건설 등의 대안검토 문제

.. 경제성 부족 및 기초지반 부실 등의 문제
.. 기타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절차상 문제점, 홍수량 산정 및 홍수조절 효과 등 기술적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대안과 관련된 쟁점사항 등

. 준비단 위원별 검토과제 연구결과를 4.22(월)까지 지속위 기획운영실에서 취합, 제6차 회의에서 토론될 수 있도록 준비

회의자료: 현지답사 일정표

6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6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3. 23(화), 16:00~20:00, 지속위 전문위원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고철환 위원장(참관)
3) 안건 : 주요쟁점 검토 및 위원별 과제연구결과 토론
4) 토의 및 결정사항

. 준비단 회의결과는 주요안건 및 결정사항 요약분과 주요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회의록으로 구분작성한 후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확정키로 함

. 한탄강댐 건설관련 쟁점사안 정리자료 설명(엄두용 박사) 및 토의

.. 지속위가 가부간의 입장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는 것은 곤란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 조정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면 찬반 양측의 추천인사로 소위를 구성하여 해법을 제시토록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임

. 이해당사자 선정관련 연구결과 설명(허상수 위원) 및 토의

.. 정부측 당사자 선정은 건교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해당사자 중 주민의 경우는 찬·반 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정하도록 하면 될 것임
.. 시민단체도 이해당사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시민단체를 독립된 당사자로 할 것인지 찬·반 양측의 위임을 전제로 할 것인지 등은 재론이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내에서도 지자체장과 의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바,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지, 이해당사자 그룹에서 몇 명을 조정회의에 참석시킬 것인지 등을 차기 회의시 논의키로 함

.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도 방안 연구결과 설명(박수선 위원) 및 토의

.. '참여 유도'보다는 '참여의 의의(실익)'에 논의의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음
.. 지속위에서 수행하게 될 갈등조정의 의의, 방향, 입장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회, 리플렛, 워크샵,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 강구 필요

.. 향후 보도자료 등은 박수선 위원과 행정지원팀이 초안을 작성(구도완 박사 검토)하고 단장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배포하기로 함

. 차기 회의시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 및 위원별 연구결과 2차 토론을 하기로 함

회의자료 : 위원별 연구자료

. 한탄강댐건설 관련 쟁점사안 정리(엄두용 박사 발표자료)

. 이해당사자 선정(허상수 위원 발표자료)

. 이해당사자 참여방안(박수선 위원 발표자료)

. 협상원칙(이선우 위원 준비자료)

7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7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3. 30(화), 14:00~18:30, 지속위 전문위원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염형철 녹색대안국장(환경운동연합)

3) 안건: 한탄강댐 건설문제 등 댐 정책에 대한 중앙환경단체의 의견 청취 및 위원별 과제연구결과 2차 토론

4) 토의 및 결정사항

. 우리나라 댐정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청취(염형철 국장 발표)

.. 피해지역 주민 이주, 농경지 일시 저류, 배수시설 및 조기경보시스템의 적정 가동,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의한 임진강유역 치수대책 수립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홍수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빗물을 하천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홍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이며 새로운 관점의 치수대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탄강댐 관련해서 철원군에서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인 바, 대안검토를 제안하고자 하며 향후 갈등조정 과정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

. 이해당사자 선정문제 논의

.. 댐건설 찬성측 2개 그룹(건교부 및 수자원공사, 댐건설 지역의 수몰대책위원회 등 찬성주민 대표)과 반대측 2개 그룹(철원지역 주민과 연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반대주민 대표, 한탄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으로 이해당사자 구분 필요

.. 찬성과 반대측 同數를 조정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조정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논의

.. 지속위의 중립적 사회갈등 조정프로세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 및 당사자 참여에 대한 설명회·간담회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 총선과 맞물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 이제부터는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대략적인 스케쥴을 짜야 하는 바, Ground Rules 정립, 쟁점과 당사자 그룹 매트릭스 작성 등의 작업에 들어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기 회의시 찬·반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회의자료: 염형철 국장 발표자료

. 한국의 물 정책 평가 - 과잉개발과 물의 위기

.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제안 물 정책 개혁 7대 과제

참고자료: 한탄강댐 관련 진행일지(행정지원팀)

8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8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4. 6(화), 14:30~19:3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이수인 포천군 수몰민 주민대표, 최해선 연천군 수몰민대책위 부위원장, 홍성옥 수몰민 종합대책위원, 홍순각 연천군 수몰민주민대표(찬성측 주민), 이병욱 포천군 대책위원장, 장진혁 철원군 대책위원장, 최의순 연천포럼 기획실장, 홍원기 연천군 대책위원장(반대측 주민)

3) 안건: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 청취 및 향후 추진계획

4) 토의 및 결정사항

. 찬성주민 의견 청취

.. 수몰지역 주민 대부분이 한탄강댐 건설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 건설을 사회적 이슈화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 반대주민들이 다락대사격장으로 인한 댐의 안전성문제, 안개 피해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가능성 등 사실과 다른 비논리적 주장을 펴면서 건교부(수공)와 주민간 합리적 대화를 방해

.. 댐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지역경제 낙후와 이웃공동체 파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임

.. 댐이 건설되면 한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는 물론, 파주에 계획중인 LG필립스 공장의 안전성 확보, 군사보호구역으로 제약을 받아 온 연천·포천·철원지역의 관광지역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파괴된 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 달성 가능

.. 앞으로 한탄강댐에 관한 논의의 범위를 '삶의 질'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 파주와 문산지역 주민들을 대화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침묵하는 절대다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며, 승복문화의 확립이 필요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속위를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결론이 나서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 반대주민 의견 청취

.. 상류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기관 이기주의 차원에서 무조건 댐만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이 문제이며, 특히 한탄강댐의 경우는 사업추진 절차의 부적정과 당초 계획내용의 번복 및 충분한 사전고지 없는 주민설명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진강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미 북한쪽에 2개의 댐이 건설되어 임진강의 수위가 낮아졌으므로 한탄강댐 건설은 타당성이 없음

.. 수공에서는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고, 댐 건설 후 다락대사격장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며, 댐이 건설되면 철원지역의 홍수피해가 가중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댐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명분을 들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음

.. 수몰지역에 투자를 해 놓은 일부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댐 건설에 찬성할 뿐, 다수 주민들은 댐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탄강의 경관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댐 건설은 철회되어야 함

. 그간의 준비단 활동결과를 4.9~10일 개최되는 전문위원회 워크샵에서 설명하고, 준비단 활동과정 및 조정위원회 출범 등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지속위 기획운영실에서 작성하기로 함

9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9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4. 13(화), 16:00~18:3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고철환 위원장(참관)
3) 안건: 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4) 토의 및 결정사항

. 북측에서 건설완료 또는 추진 중인 임진강 본류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엄두용 박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임진강 북측 유역 현지조사에 엄두용 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위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함

. 남북공동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4.8~10, 개성) 개최결과, 지속위의 한탄강댐 갈등조정활동의 목적과 활동범위 등이 복잡해졌음. 일단은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진행하되, 남북협력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소 지연이 불가피함

. 한탄강댐 문제를 다룰 위원회의 명칭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재론하고, 한탄강댐관련 자료모음집을 조속히 발간하여 자료실에 비치하며, 그간의 준비단 활동사항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조정절차는 ①주민 홍보, ②이해당사자 그룹별 워크샵 개최, ③이해당사자 그룹 대표 선정, ④지속위에 대한 신임 여부 확인, ⑤Ground Rule 협의, ⑥이해당사자 그룹별 Matrix 작성, ⑦조정활동 개시(대안 검토 등을 거쳐 합의문 작성 완료) 등의 순서를 거치면 될 것임

. 한탄강댐과 관련한 지속위의 향후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주민홍보자료 초안을 기획운영실에서 작성하여 준비단에서 검토·확정하고, 언론홍보를 위한 지역매체를 조사하기로 함

. 관련 이슈별 이해그룹 분류,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시 대처방안,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simulation,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

. 4월말부터 농번기에 들어가므로 가급적 조속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반대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4월 24일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의자료: 한탄강댐 해법찾기(김경위원 발표자료)

10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0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4. 20(화), 16:00~19: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이선우,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고철환 위원장(참관)

3) 안건: 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조정프로세스, 향후 추진일정 등 논의

4) 토의 및 결정사항

. 지속위의 조정역할 관련

..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지속위의 갈등조정역할에 대하여 대체로 이해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였으나, 지속위가 한탄강댐 문제의

결정기관이라는 일부의 오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해소노력이 필요

.. 갈등조정위원회는 관련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조정의 범위는 한탄당댐 건설 여부뿐 아니라 지역의 홍수예방방안에 대한 조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 이해당사자 선정 관련

.. 이해당사자는 댐 건설 찬·반 지역주민, 환경관련 시민단체, 정부 및 수자원공사 등 4개 그룹을 선정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이해당사자 대표가 선출되어 조정위원회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안강구 필요(지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이해당사자 대표 워크샵 개최 등)

.. '이해당사자'라는 표현은 앞으로 '관련당사자'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함

.. 정부측 관련당사자의 추천을 국무조정실에 의뢰하기로 함

... 정부측 당사자가 건교부로 일원화되면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서의 이견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음. 조정과정에서 부처협의 필요사안은 지속위에서 조정하기로 함

.. 관련당사자 대표는 그룹당 2~3명선으로 하여 10명 내외로 하기로 함

... 시민단체와 정부는 2명씩, 찬·반 지역주민은 3명씩으로 하여 10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구성이 다양하고 다양한 의견의 취합이 중요하므로 옵저버로서의 참여도 고려하고, 회의 형식에 따라 발언권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임

... 관련당사자를 5.11일까지 추천하도록 5.1일에 문서로 요청하기로 함

. 관련당사자의 협상참여 유도방안

.. 지속위의 중립적이며 투명한 조정프로세스에 관한 언론홍보 필요

... 이영희 위원과 유제철팀장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홍보 일정은 주민설명회 일정과 연관시켜 결정키로 함

.. 지역주민 등 관련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정의 의미와 과정, 참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 추진(조정 참여시의 장점과 불참여시의 불이익을 설득)

... 시민단체와 건교부·수공 설명회: 4.29일

... 지역주민 설명회: 4.30 또는 5.1일 중 가능한 날로 함

... 설명회 기획안과 자료목록은 박수선소장과 유제철팀장이 작성

.. 관련당사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워크샵 개최

... 관련당사자 대표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여(5.14~15일) 대표자회의 일자 등 결정

. Ground Rule은 이선우 위원의 초안을 기반으로 보완 작성한 후 1차 대표자 회의에서부터 논의하여 5월말 전까지 확정키로 함

. 엉뚱한 대안제시 등 시간지연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대안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한 Sub-Committee 구성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준비하기보다는 조정과정에서 관련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기존의 B/C분석자료가 매우 부실하므로 조정자가 사실확인과 필요한 조정지식을 갖추기 위해 기초자료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함

. 준비단의 노력과 시간투여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

. 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이메일로 모집키로 함

.. 김경 위원의 기 제출안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시간투여 가능여부가 절대적인 전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준비단 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전원 갈등조정위로 전환하기로 하고, 준비단장이 위원장과 논의하여 주 조정위원과 지원위원을 구분하여 정하기로 함

. 관련대표자 모임에 대해 책임감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적정한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음(회담, 대표자회의, 상견례 등)

.. 엄두용박사, 허상수위원이 행정지원팀과 논의하여 적절한 명칭을 제시하기로 함

. 본격적인 조정기간을 6~8월까지로 표명하여 관련당사자들의 참여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 박수선 위원이 발제한 '한탄강댐 갈등분쟁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청취 및 현재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가면서 관련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대응하기로 결정

. 4.27일 회의는 준비단활동보고서 검토, 준비단 해단 및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회의로 개최하기로 함

5) 차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04. 4. 27(화) 16:00, 장소는 추후 결정

. 안건: 준비단 활동결과보고서 검토 및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준비단 해체

회의자료: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운영현황 및 계획(정진승 단장)
한탄강댐갈등분쟁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박수선 위원 발표자료)
그간의 준비단 활동을 통해 정리된 사항(행정지원팀)

참고자료: 한탄강댐관련 주요이슈와 제단의 입장(행정지원팀)

11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1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4. 27(화), 16:00~21:0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이선우,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고철환 위원장(참관)
3) 안건: 주민설명회 일정, 보도자료 및 주민설명자료, 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
4) 토의 및 결정사항
   . 보도자료 및 주민홍보 리플렛 문안·도안 검토 및 자료배포방법 결정
      .. 준비단장이 연천군과 철원군을 방문하여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함(4.29)
      .. 리플렛에 준비단 위원명단과 조정절차도를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 추가의견을 4.28일 오전까지 수렴하여 최종확정하기로 함
      .. 리플렛 배포는 지자체와 한탄강댐 찬반대책위에 동시 의뢰
   . 주민설명회 일정 및 자료작성방법 결정
      ..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설명회를 5. 1(토)에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함
      .. 설명회자료 초안을 박수선위원이 작성하고 행정팀에서 수정·보완하여 파워포인트자료로 작성
   . 조정위원회 참여 위원 선정문제 논의
      .. 현 준비단 위원이 조정위에 참여키로 하고, 주조정자 혹은 현장팀은 추후 결정
   . 관련당사자 대표와 조정위원이 참가하는 회의체의 명칭 결정
      ..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한탄강댐조정회의)'로 결정
   . 엄두용 박사를 조정회의에서의 논의사항 기록전담자로 지정
   . 한탄강댐조정회의 시뮬레이션 실시 필요성 합의
   . 주민설명회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대책 토의
5) 차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04. 4. 29(목) 10:00, 지속위 제2회의실
   . 안 건: 환경단체와 정부에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 설명

회의자료: 준비단 제11차 회의시 논의필요사항(기획운영실)

12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2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5. 4(화), 16:00~19:3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허상수, 이선우, 김경, 이영희, 박수선 위원(갈등관리

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고철환 위원장(참관)

3) 안건: 주민설명회 결과평가, 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준비단 해단 이전에 추진할 사항 선정

4) 토의 및 결정사항

. 주민설명회 결과평가

.. 한탄강댐 찬성주민 설명회('04.5.1 19:00시, 연천군민회관, 250여명 참가)

... 홍수피해지역인 파주지역 주민들의 찬성측 관련당사자 포함 여부

... 환경단체를 관련당사자에 포함시킨 사유

... 수몰지역 면적비에 의한 주민대표자 선정 등의 질의와 요구가 있었음

.. 반대주민 설명회('04.5.1 19:00시, 철원군청, 300여명 참가)

... 찬성주민들의 관련당사자 적격성 여부

... 수자원공사 연천사무소 철수

... 반대대책위에서 발주한 한탄강댐 타당성검토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당사자회의 연기 등의 질의와 요구가 있었음

. 임진강 북측에 건설된 댐의 수해방지효과와 한탄강댐 건설과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엄두용 박사가 작성키로 함

. 한탄강댐 타당성검토 연구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로 한탄강댐조정회의를 연기하자는 반대측 요구와 관련, 정진승 단장과 행정팀이 장진혁 의장을 접촉하여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기로 함

. 주민대표자 선정을 지방의회와 대책위 등에 요청하고, 대표자가 선정되면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기로 함

. 한탄강댐조정회의에는 박수선·이선우·허상수 위원이 참여하기로 하고, 정진승 단장, 김경·이영희 위원은 지속위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지속위 내의 각종 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해 소위원회로 명칭 결경)' 참여를 통해 한탄강댐 조정회의 참여위원을 지원하기로 함

. 허상수 위원이 관련당사자 대표자 워크샵 기획안을 마련하고, 이선우 위원이 워크샵에서 논의할 Ground Rule을 보완·작성키로 함

. 갈등조정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노력하고, 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기로 함(행정팀 작성 후 공람)

5) 차기회의

. 일시 및 장소: 2004. 5. 11(화) 16:00, 지속위 제2회의실

. 안 건: Ground Rule, 갈등조정소위원회 업무규정 및 운영방안 등 논의

13차,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제13차회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004. 5. 11(화), 16:00~18:30, 지속위 제2회의실
2) 참석자: 정진승 단장, 박수선, 이선우, 이영희 위원(준비단), 남재우, 유제철, 엄두용, 권기태(행정지원팀)
3) 안건: 한탄강댐 갈등조정계획, Ground Rule,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업무 등
4) 토의 및 결정사항
   . 관련당사자 대표들과 한탄강댐조정회의가 개최되면 반대측에서 수자원공사 연천사무소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준비하도록 건교부에 통보하기로 함
   .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논의 및 결정
      .. 반대주민 대표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찬성주민 대표자의 수는 반대주민 대표자보다 적어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이 있음
      .. 주민대표의 수를 늘리는 것은 수용가능하나 찬성측과 반대측 대표의 수에 차이를 둘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단장이 장진혁 의장과 우선 협의한 후 필요시 김경 위원과 박수선 위원이 장진혁 의장을 방문하여 설명하기로 함
      .. 찬성측 대표단에 홍수피해지역 주민이 포함되는 것이 찬성측 대표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함
      .. 환경단체에서 대표자를 3명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이 왔는 바, 건교부 대표자도 3명이 되도록 조치하기로 함
   .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의 Ground Rule(이선우 위원 작성)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함
   . 관련당사자 대표자 워크샵(당초 14~15일로 예정)은 대표자 선정문제와 맞물려 있으므로 불가피 연기하기로 함
   . 갈등조정소위원회 업무확인서(행정팀 작성)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행정팀에서 수정 및 위원 공람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함
5) 차기회의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주 회의는 따로 개최하지 않기로 함
   . 관련당사자 대표자들과의 워크샵 일정 및 장소 협의, 워크샵 기획안(허상수 위원 작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워크샵을 추진하기로 함

<부록2>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회의별 회의자료 (1차~13차)

1차회의: 1)정책협상(팔당호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2)팔당호대책 수립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갈등조정과정, 3)특별대책수립 추진일정 (정진승 단장)

2차회의: 4)한탄강댐 추진상 문제점(최석범 소장), 5)한탄강댐 갈등조정 작업 계획안 (정진승 단장)

3차회의: 6)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KEI)

4차회의: 7)한탄강댐 추진현황, 그간 제기된 사항(건교부)

5차회의: 8)현장답사 일정표(행정지원팀)

6차회의: 9)한탄강댐건설 관련 쟁점사안 정리(행정지원팀), 10)이해당사자 간별(허상수 위원), 11)이해당사자 참여방안(박수선 위원), 12)협상 원칙(이선우 위원)

7차회의: 13)한국의 물 정책 평가 - 과잉개발과 물의 위기, 14)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제안 물 정책 개혁 7대 과제(환경운동연합), 15)한탄강댐 관련 진행일지(행정지원팀)

9차회의: 16)한탄강댐 해법찾기(김경 위원), 17)제3차 남북공동 임진강수해 방지실무협의회 개최결과(건교부)

10차회의: 18)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운영현황 및 계획(정진승 단장), 19)한탄강댐갈등분쟁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수정본(박수선 위원), 20)한탄강댐 관련 쟁점과 관련당사자의 입장(행정지원팀)

11차회의: 21)준비단 제11차 회의시 논의 필요사항(행정지원팀)

12차회의: 22)준비단 제12차 회의시 논의 필요사항(행정지원팀), 23)준비단 해단 이전에 해야 할 일(허상수 위원), 24)임진강 수해방지대책 추진현황(건교부), 25)수몰민 종합대책위원회 건의서(연천군)

13차회의: 26)준비단 제13차 회의시 논의 필요사항(행정지원팀) 27)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업무 확인서

<첨부1> 정책협상(팔당호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정진승단장 발제자료)

<첨부2> 팔당호대책 수립과 지역시민사회와의 갈등조정과정 (정진승단장 발제자료)

<첨부3> 특별대책 수립 추진일정(정진승단장 발제자료)

'98.5.6	. 팔당호 수질개선특별대책 수립계획 보고(환경부장관→대통령)
5.13	.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지시 (국무총리→환경부등 7개부처·5개 광역자치단체)
5.15	. 특별대책 수립 기획단 구성(환경부)
5.16-6.7	. 대책수립지역 현지실사 7회(기획단, 관계부처)
5.26	. 한강수계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환경부) - 경기, 강원, 충북도 환경국장, 경기도 7개시·군 부시장등
5.27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에 설명 및 협조요청(환경부)
6. 8	. 팔당물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KEI,환경부)
6.12	. 조선, 동아, 중앙일보 논설위원 초청오찬(환경부)
6.13	. 환경부 실·국 주무과장 검토회의(환경부)
6.15	. 경실련, 전문가 팔당현장 시찰(환경부 협조)
6.17	. 환경부 정책심의회(장관주재)
6.18	. 팔당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경실련)
6.29	. 고건 서울시장 면담(환경부장관)
7. 2	. 관계부처, 지자체 대책수립 검토회의(총리실)
7. 3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제안 접수(환경부)
7. 5	.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본부, 양평축협등 방문 협의(환경부)
7. 8	. 경기지사 환경부장관 내방, 대책협의(환경부)
7.11	. 경실련, 전문가 대책(안) 검토회의(환경부)
7.13	. 경기도 시·군과장 의견수렴 회의(환경부)
7.15	. 팔당대책 정책간담회(경기도) - 경기지사 주재,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환경부차관 등
7.20	. 환경부 실·국 주무과장 검토회의(환경부)
7.21-24	. 대책 분야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검토회의 4회(총리실)
7.24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검토회의(환경부)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질분과위원회 및 한국물환경학회 연석 검토회의(환경부)
7.27	. 관계부처 대책안 협의(환경부) . 환경부 출입기자단 설명회(환경부)
7.28	. 한강수계 광역자치단체 담당국장 검토회의(환경부) . 경기도 동부권 및 임진강유역 시장·군수협의회 검토회의(환경부)

7.30 . 동부권 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
. 경기도지사 조찬간담회(경기도)

7.31 . 임진강 유역 5개 시·군과장 검토회의(환경부)

8. 1 . 팔당유역 민간단체 의견수렴(환경부)
.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8. 5 .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국민회의,자민련 정책조정위원장)

8. 6 . 양평군 범대위 대표 면담(환경부장관)

8. 7 .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8.10 .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청와대 사회복지수석)

8.10
−11 . 관계부처 쟁점사항 조정회의(총리실)

8.13 .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대통령)

8.14 . 물이용부담금 관련, 5개 시·도 회의(환경부)

8.17 . 양평군 현장방문, 의견수렴(환경부)

8.18 .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 임진강 유역 5개 시장·군수 설명회(환경부)
. 동부권 시장·군수 및 시의회 의장단 토론회(환경부)

8.19 .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 특별대책(안) 기자설명회(환경부)
. 임진강권역 5개 시장·군수, 의회 의장단 설명회(환경부)
. 인천시장과의 조찬회의(인천시)
.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면담(환경부)
. 주요 일간지, 방송국 논설위원 대책(안) 자료송부(환경부)

8.20 . 물관리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총리실)
. 특별대책(안) 설명(환경부→춘천, 원주, 충주시장)
. 특별대책(안) 설명(환경부→서울시장)
. 특별대책(안) 설명(환경부→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KBS−TV 정책진단『먹는물 안전한가』출연(환경부장관)

8.21 . 강원도 도의원등 5명 내방, 면담(환경부)
. KBS 라디오 대담『박찬숙입니다』출연(환경부장관)

8.22 . 재원대책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총리실)
. 환경부 대책(안)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서울시)

8.25 . 세종문화회관 공청회 개최(무산)
. 공청회 무산에 따른 기자설명회(환경부)
. 공청회 무산경위 보고(환경부→국무총리)

8.26 . KBS−TV, SBS−R, 충주 MBC−R 인터뷰, 언론사 취재협조(환경부)

8.27	. 경기·강원·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대책(안) 설명(환경부) . 공청회 무산관련,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 KBS-R, YTN, 인천TV 인터뷰, K-TV 출연, 중앙일보 등 취재 협조 등(환경부)
8.28	. 교통방송 출연, 대책(안) 설명(환경부) . 춘천MBC 인터뷰(원주지방청)
8.29	. SBS-R 인터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취재협조(환경부)
8.31	. 경기·강원·충북 도 환경국장 및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환경부) - 특별대책(안) 설명 및 공청회 무산에 따른 대책토의 . 강원도지사 면담(환경부장관) . 이성호의원등 팔당 지역구의원 7명 면담(환경부장관)
9. 1	. 경기방송 인터뷰(환경부장관) . KBS·MBC·SBS 만찬간담회(환경부) . 동부권 시장·군수대표단 면담(환경부장관) . 팔당궐기대회 대표단 면담(환경부장관)
9. 2	. 팔당지역주민궐기대회(양평강상체육공원)
9. 3	. 충주시장 면담(환경부장관)
9. 4	. 팔당대책 토론회 참여(환경운동연합 주관) . 팔당지역 토론회 참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주관) .『중부일보』인터뷰 (환경부장관)
9. 5	. 팔당지역 축협조합장 등 7인 면담(환경부장관) . 팔당특별대책 시민토론회 참여(경실련 주관)
9. 7	. 녹색연합 방문, 대책(안) 설명(환경부)
9. 8	. 한살림, 대한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방문, 대책(안) 설명(환경부) . 팔당대책토론회 참석(녹색연합 주관) . YTN 및 인천TV 대담
9. 9	. 흥사단, 그린훼미리운동연합 방문, 대책(안) 설명(환경부) . 철원군 주민대표, 철원군 의회의원 7명 방문(환경부장관) . 강원도 의회 의장 면담(환경부장관)
9.10	. 제천시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 장관) .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 회의 참석(환경부 장관)
9.11	. 춘천시 범시민토론회(춘천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주관) . 인천방송 인터뷰
9.14	. 춘천시 팔당대책 토론회(환경4단체 주관) . CBS-R 인터뷰 . 충주시 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장관) .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의 - 팔당대책 설명(환경부장관)

9.16 .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 팔당현장 방문

9.17 . 자민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특별위원회에 대책(안) 설명(환경부)
. 팔당대책 설명회 참석(이천상공회의소 주관)
. 팔당대책(안) 강원지역 신문사 광고(강원일보, 도민일보)
. 경기도지역 의원 보좌관 간담회

9.18 . 팔당대책 설명회(의정부 상공회의소 주관)
. 대통령 강원도청 순시현장에서 팔당물 대책 설명(환경부장관)

9.19 . EBS 정책토론회 전화 인터뷰(환경부장관)

9.21 . 원주지역 상공인 간담회(원주 상공회의소 주관)
. 원주시장 면담(환경부 차관)
. 팔당수질개선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대책설명(환경부장관)
- 경기연합대책위, 춘천범대위, 충북대책위 공동주최
. 국민일보 기고『한강수질 개선대책』(환경부장관)

9.22 . 팔당호 준설관련 공청회(국립환경연구원 주관)
. 자민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위원회 팔당현지조사

9.23 .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 비공개 토론회(환경부장관)
. KBS 대담(환경부장관)
. 법무부 환경전담검사 팔당대책 설명회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팔당대책 기술적 대담
. 재원대책관련 관계부처 회의(총리실)

9.24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팔당대책 기술적 대담
. 팔당대책 추진상황 기자간담회

9.25 . 자민련 팔당특별대책위원회 간담회
. 충북도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장관)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팔당대책 기술적 대담

9.28 . SBS라디오 토론프로 출연

9.29 . 팔당특별대책 충북지역(충주) 공청회
. 환경관련 민간사회단체(38개) 간부대상 팔당대책 설명

9.30 . 팔당특별대책 강원지역(원주) 토론회
. 충북지사, 충주·제천·보은·음성·단양 시장·군수 면담(환경부 장관)
. 환경노동위원회 팔당대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10.2 . 팔당특별대책 강원지역(철원) 공청회

10.7 . 광주군의회의장, 용인시의회의원 면담(수질보전국장)
. 시민단체·전문가 집담회(경실련 주관)

10.12 . 양평유기농업운동본부 정상묵회장등 5명 면담(환경부 차관)

10.13	. 국민회의, 자민련 제3정책조정위원장에 설명(환경부 차관)
10.14	. 자민련 정책위 의장에 설명(환경부 차관)
10.15	. 팔당대책 및 특별법 당정회의(국민회의, 자민련)
10.16	. 단양군의회 의원(6명) 면담
10.19	. 팔당특별대책 서울·인천지역 공청회(환경부 주관)
10.20	. 재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10.21	.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과의 간담회(환경부 장관) . 철원군 의회 의원 면담(환경부 차관)
10.22	. 특별대책(안) 제출(환경부 → 국무총리실)
11. 3	. 물이용부담금 관계관 회의(환경부)
11. 4	. 특별대책(안)에 대한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 주재 상류 지역 지자체, 주민대표 및 환경부, 경기도 관계관 회의 * 9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11. 7	. 특별대책(안) 쟁점사항 조정을 위한 관계국장회의(총리실)
11. 9	. 특별대책(안) 쟁점사항 조정을 위한 관계차관회의(총리실)
11.16	. 물이용부담금 관계관 회의(환경부)
	. 특별대책(안)에 대한 물관리정책조정 자문위원회(총리실)
11.19	. 한강상류주민 궐기대회(여의도 고수부지) . 특별대책(안)에 대한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11.20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확정

<첨부4> 한탄강댐 추진상 문제점(최석범/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 2004. 2)
(2004.2.26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설명자료)

1) 서 언(반대하는 이유)

. 국책사업추진은 절차와 정직성에 하자가 없어야 함

.. 하자가 있다면 마무리단계까지 분란의 소지가 있음

.. 절차는 예비타당성, 타당성,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업자선정

.. 계획단계마다 과업수행자의 정직성이 요구됨

. 국책사업 시행여부는 타당성분석이 기준이 되어야 함

.. 타당성분석의 가장 큰 비중은 경제성(투자효율)이어야 함, 정책적 판단은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 높고, 국가재정의 낭비 요소가 많음

.. 계획, 설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도 결국 정확한 투자비와 효율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함

. 사업시행은 부처이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많아 정직성 결여

.. 자료는 자기편리에 의해 가공하고, 부풀리는 경향이 있음

<오봉댐재개발을 위한 강릉시 물부족량 산정예>

(단위:톤/년)

구 분	댐개발계획	기존댐재개발	수장기	예비타당성	타당성	비 고
수립년도	2001. 5	2001.5	2001.12	2002. 8	2003.12	
수립기관	수공,건교부	수공,건교부	수공,건교부	KDI,삼안	수공,건교부	
댐개발목적	상수도	상수도	-	상수도	홍수조절	
2006년 수요량	38,300,000	38,300,000	-	31,800,000	26,600,000	
현공급능력	21,000,000	21,000,000	-	21,000,000	31,900,000	
2006년 과부족	-17,000,000	-17,000,000	-1.000,000	-10,800,000	+5,300,000	2,230만 차이

.. 효율 키우고, 사업비 줄여서 사업타당성을 합리화시킴, 마무리시점에서는 사업비는 2~10배 소요되나 책임지는 자 없음

.. 동일사항에 대해서 추진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여기에 전문가,대학교수들이 동원되어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킴

. 하나의 목적(홍수방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다양함

.. 제방증고, 하도개량.굴착, 댐건설, 분수로, 저지대매립, 배수펌프장건설

.. 조직의 이익, 추진주최측에 유리토록 결론을 몰아가는 경향이 큼

.. 대안비교에 정직성 필요(채택가능성은 동일함)

. 만일 다른부처를 주관토록 한다면

.. 환경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민간기업에게 1조2천억원 범위내에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면 댐 아닌 다양한 계획안을 제시할 것임

2) 댐계획 개요

. 건설목적

.. 임진강하류 특히 문산지역의 홍수방지대책 수립이 목적임, 문산지구가 임진강 전체 피해액의 약80%에 해당

.. 12년전 임진강 문산지구 100년홍수량 16,200톤/초로 설정, 제방교량시공되었으나, '96년부터 3개년 연속 홍수 감안 재분석 결과 100년 홍수량 19,800톤/초로 산정, 초과분 3,600톤/초에 대한 방어대책 필요

.. 방어대책 안으로 크게 3개안(제방, 댐, 분수로)을 검토, 한탄강댐(군남조절지포함) 건설안이 최적안으로 채택함

.. 한탄강댐, 군남조절지등을 설치하더라도 '96,' 99년 홍수는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96 24,100톤/초, '99 20,200톤/초)

. 추진 경위

.. 1995.06~1997.12 임진강유역조사(건교부,수자공)

.. 1998.12~1999.12 수도권수자원(한탄강댐,영평천댐)개발계획(건교부, 수자공)

.. 1999.12.28 수해방지종합대책(대통령비서실)-홍수조절용댐 계획토록 지시

.. 1999.12~2000.12 한탄강댐설계, 환경영향평가자료완료(수자공)

.. 1999.12~2001.06 임진강수해원인 및 대책수립(건교부)

.. 1999.12~2001.12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보완(건교부)

.. 2002.01~2002.02 국무총리지시 댐건설 타당성검증단 자문

.. 2002.03 한탄강댐기본계힉 검토보고서(위자문결과를 보완)

.. 2002.12 설계시공발주심사에서 대림산업이 우선계약사로 잠정결정

.. 2003.12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년15일만 물채움, 홍수조절전용댐 개발, 반대 주민 설득후 시행)

. 한탄강댐 계획 개요(2002. 11 현재)

.. 댐위치: 포천.창수.신흥-연천.연천.고문

.. 댐형식: 콘크리트 중력식

.. 댐높이 및 길이: H=85m, L=705m

.. 댐정상고: EL121.0m

.. 총저류용량: 3.05억톤

.. 상시만수위: EL73.0m(평시 유지수위)---용수이용을 위한 수위

.. 200년홍수위: EL116.8m(수몰보상선)

.. 가능최대홍수위: EL119.1m(약 만년홍수)---809mm/2일에 대해서

시설명	군남조절지	한탄강댐	농경지저류,기타	계
A:조절효과	700톤/초	2,700톤/초	200톤/초	3,600톤/초
B:사업비(억원)	1,283	9,750	976	1조2천억원

3) 추진절차의 문제점

. 정상적인 추진절차

.. 임진강수해원인조사 및 대책→한탄강댐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업자선정

. 한탄강댐 실제추진

.. 한탄강댐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신청→임진강수해원인조사 및 대책→실시설계 및 시공업자선정→환경영향평가조건부승인

. 그릇된 추진절차로 발생된 문제점

.. 발주시기는 동일하나 한탄강댐건설을 기정사실로 하여 한탄강댐 기본설계용역을 가장먼저 준공했고, 용역사도 각각 달라 가장 기초자료인 확률강우량이 서로 다른값을 사용

.. 홍수조절효과는 1,279km인 한탄강댐 지점 2,560톤/초에서 6배의 유역면적(7,600km2)인 하류 문산지역에서 2,700톤/초라는 상식 밖의 오류를 범함

. 추진절차로 발생된 문제점의 해결

.. 2002년 2월 뒤늦게 오류발견, 강우량을 키워 댐지점의 홍수조절효과를 키우거나, 문산지역의 홍수조절효과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함. 결국 강우량을 늘려 댐홍수조절효과를 키우는 방법을 택함

.. 2000.12월 100년 빈도강우량 471mm→2002년3월 기본계획보완보고서에서 520mm로 증가→최종 568mm를 적용(21%증가)시켜 한탄강댐에서의 조절효과를 2,560톤/초→2,880톤/초로 바꿔 문산지방의 2,700톤/초를 합리화 시킴

. 환경영향평가승인전 시공업자선정

.. 설계시공일괄(턴키)발주, 심사결과 1등 회사인 대림산업 잠정결정

4)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모순

. 홍수조절효과 분석의 기본

.. 댐을 쌓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댐유역 이외의 다른 유역도 동일조건하에서 계산해야 옳다. 그러나 한탄강댐의 홍수량은 키우고, 다른 유역은 상대적으로 줄여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를 과대포장했다.

.. 한탄강댐을 막음으로서 홍수절감효과가 크면 건설타당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타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 추진측 주장

.. 한탄강댐 건설의 목적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문산지역에서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수공측은 “한탄강댐을 막아 2,880톤/초(4,850중 1,970방류)의 유량을 절감시켜 내려보내면 유역면적의 6배나 큰 문산지점에서 2,700톤/초이 절감되며, 이러한 량은 문산지역의 홍수량 19,800톤/초 중 13.6%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에 사용되던 방식(Myer-Gariss)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된 시절의 공식이고, 새로운 이론에 의해 정밀분석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주장이다.

. 추진측 주장 반박

.. 산술적으로 한탄강댐에서 100% 차단시킨다면 유역면적비인 16.6%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한탄댐은 60% 차단토록 계획되어 9.9% (16.6*0.6) 이상 효과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 『상류에서 2,880톤/초이 6배나 큰 유역에서 거의 같은 량 2,700톤/초의 홍수조절효과가 있다』는 논리는 한강의 소양댐(5,000), 평화댐(6,000), 화천댐(4,100), 충주댐(2,000), 횡성, 괴산, 춘천, 의암, 청평, 팔당과 수많은 소저수지들을 고려하면 댐 건설전 한강인도교 200년 빈도 홍수량 38,000톤/초 중 10,000톤/초도 안되어 “평생 홍수 걱정 안 해도 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실제로는 상류의 댐건설영향이 유역면적이 큰 하류에 올수록 점점 작아진다. 따라서 과거의 대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영산강)에서는 Myers-Garris식을 써서 그 효과를 평가했다. 그 식에 의하면 5.3%에 불과하다.

.. 따라서 댐건설로인한 홍수조절효과는 5.3~10%정도의 결과라야 적당하다.

. 추진측의 편법계산으로 효과 과대

.. 해당지역 비유량(홍수량/유역면적)이 특수유역이 아니라면 2.58로 거의 동일해야 옳다. 그러나 한탄댐은 타유역에 비해 2~3배 크게 산정하여 홍수조절효과를 과장 했다.

.. 문산지점에서 19,800톤/초의 홍수량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해당유역이 어느정도 기여했는가의 기여율 분석을 하였으며, 해당면적비율과 거의 동일해야 옳다. 그러나 타유역 대부분은 면적율보다 훨씬 이하인 반면 한탄강댐은 유일하게 42% 크게 산정

..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 계획수립 했고, 하천법에 의해 고시까지 완료

한 하천정비기본계획값과 비교하면 한탄강댐 이외의 하천은 30% 내외로 축소시킴, 심지어 건교부에서 수립한 문산천의 경우 건교부 고시값의 27%에 불과,자기모순에 빠짐

.. 홍수량의 편법계산방법은 한탄강댐은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타유역은 의도적으로 작게 산출되도록 계산하였으며, 특히 저류계수(R)는 도달시간(Tc)의 0.8~2.8배 정도로 학계에 보고되었으나 29~90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적용하여 홍수량을 줄였음

<표6 >19,800에 대한 면적비 및 피크홍수량 기여율

지 점		유역면적(km2)		유로연장(km)	자체홍수량(톤/초)		해당유역 제외 홍수량(톤/초)			면적에 대한 기여율 (기여율/면적율)	강우량(mm)	Tc(hr)	R(hr)
		해 당 지 역	면적율 (해당면적/7,677)		홍수량	비유량 (홍수량/면적)	문산합류후 피크 홍수량	절감량 (19800-피크홍수량)	기여율 (절감량/19800)				
임진강본류 (한탄합류전)	고미합류전	1,124	14.4	89.6	3,047	2.71	16,864	2,936	14.8	103%	568.2	9.6	29.6
	고미탄천	1,055	13.7	113.7	2,421	2.29	17,733	2,067	10.4	76%	568.2	12.3	38.1
	고미탄합류	2,179	28.4	-	5,447	2.50	15,321	4,479	22.6	80%	568.2	-	-
	평안천합류	3,245	42.2	-	8,874	2.73	11,461	8,339	42.2	100%	568.2	-	-
	한탄합류전	4,269	55.6	-	11,888	2.78	8,044	11,756	59.4	106%	570.7	-	-
한탄강 (댐상류)	한탄강댐	1,279	16.6	116.6	4,854	3.80	15,139	4,661	23.5	142%	568.2	-	-
한탄강 (댐하류)	영평천	565	7.40	40.6	1,027	1.82	18,789	1,011	5.1	67%	694.5	7.5	67.6
	신천	339	4.4	37.5	563	1.66	19,228	572	2.8	64%	647.9	6.9	72.9
	차탄천	187	2.4	37.9	268	1.40	19,513	287	1.4	58%	536.5	6.0	66.1
	임진합류전	2,436	31.7	-	6,733	2.76	13,158	6,642	33.5	106%	574.0	-	-
임진강본류 (한탄합류후)	사미천	462	6.0	47.5	509	1.10	19,285	515	2.6	43%	530.0	8.3	90.7
	문산천	188	2.4	29.2	290	1.54	19,488	312	1.5	62%	554.8	5.2	62.7
	문산합류후	7.677	100.0	-	19,800	2.58	19,800	0	100.0	100%	574.0	-	-

주1) 해당유역이 문산천합류후 피크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표임

<표7>기존하천정비기본계획과 금회산정값과의 비교

지 점		유역면적 (km2)	유로연장 (km)	유역경사	홍수량(톤/초)			비 고
					수공산정	기존하천계획	비 율	
임진강본류 (한탄합류전)	고미합류전	1,124	89.6	1/78	3,047	-	-	
	고미탄천	1,055	113.7	1/86	2,421	-	-	
	평안천	400.7	69.4	1/73	1,298	-	-	
한탄강 (댐상류)	역곡천	481.5	75.5	1/116	1,380	-	-	
	한탄강댐	1,279	116.6	-	4,854	-	-	
	한탄강	2,501	141.0	-	6,737	7,880	0.85	경기도
한탄강 (댐하류)	영평천	565	40.6	1/48	1,027	3,290	0.31	"
	신천	339	37.5	1/66	563	2,210	0.25	"
	차탄천	187	37.9	1/46	268	1,150	0.23	"
임진강본류 (한탄합류후)	사미천	462	47.6	1/77	509	1,440	0.35	"
	문산천	188	29.9	1/55	290	1,040	0.27	건교부
	문산합류후	7.677	-		19,800	16,200	1.22	건교부

5) 대안비교

. 대안비교의 원칙

.. 여러개 안 중 동일효과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으로, 채택 가능성도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가장 타당성 있는 안을 선정해야 원칙

. 대안 비교

.. 크게 3개의 안(제방 및 하도개량, 댐건설, 분수로)에 대해서 검토, 댐건설이 가장 타당한 안으로 선정하였음

구 분		제1안 (하도)	제2안 (하도+댐+농경지저류)	제3안 (하도+댐+조절지)	제4안 (하도+분수로+농경지저류)	제5안 (하도+댐+분수로)
사업개요	제방증고	L=473km, h=2.2m(평균)	L=12km, h=0.6m	-	L=16km, h=0.9m	L=11km, h=0.4m
	하상준설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한탄강 다목적댐	-	v=3.05억톤, Q=2,700cms	v=3.05억톤, Q=2,700cms	-	v=3.05억톤, Q=2,700cms
	분수로	-	-	-	L=38.8km	L=38.8km
	천변저류	5개소	5개소	① 5개소	5개소	5개소
	농경지저류	-	3개소	-	3개소	-
	군남 홍수조절지	-	-	v=0.46억톤, Q=700톤/초 조절	-	-
사업비(억원)		17,870	11,497	12,059	13,392	22,182
채택여부				채택		

. 제1안의 모순점

.. 한탄강댐 하류 본류 하천 총연장 60km임에 비해 2000.12 보고서 초안은 제방연장 536km, h=2.2m로 산정 무언가 틀렸다고 문제 제기, 2002.11월 보완보고서는 제방연장 473km로 수정, 다시 틀렸다고 근거를 제시하자 , 2004년 현재 다시 수정보고서를 냈다고 함

.. 사업비의 상당량 부풀려짐, 100년빈도 홍수에서 본류는 기존제방의 부족부분과 본류에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 일부만을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부분의 제방공사비를 포함하였음. 본류 제방 및 교량 사업비100%, 제1지류 제방 및 교량 사업비와 소하천사업비 40%, 제2지류사업비를 제외하면 6,000억원 내외임

.. 만우천은 댐건설전후 수위차는 0.3m에 불과함에도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940억원이 소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들지 않는다는 논리는 불합리

.. 현재 자료를 공개치 않아 규명을 할 수 없지만 추후 정밀검토 필요

< 지류 제방 공사 개략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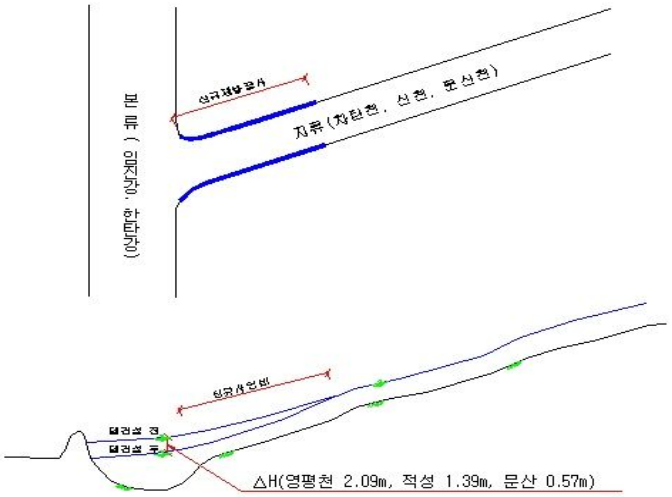

<표3> 제1안(제방증고)의 개략 사업비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방연장(km)	사업비(억원)		계	본류 영향율	사업비	비고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제방	교량				
임진강	9.54	오금천				4.6	110	-	110	0.8	88	
	9.54	만우천				10.1	241	696	937	0.8	750	
	10.18	문산천	10.18			16.2	374	614	988	0.4	395	
	"	문산천	"	비암천	27.45	14.0	317	181	498	0.0	0	
				분수천	15.85	6.1	137	146	283	0.0	0	
				갈곡천	10.84	13.4	305	462	767	0.0	0	
				삼방천	27.82	3.8	85	235	320	0.0	0	갈곡지류
				동문천	9.93	8.3	191	255	446	0.0	0	
				향양천	10.58	4.3	97	272	369	0.0	0	
	21.26	가월천	19.56			7.7	251	188	439	0.4	174	
	21.28	설마천	19.61			8.2	276	-	276	0.4	110	
	16.21	눌노천	14.86			5.8	214	226	440	0.4	176	
				답곡천	86.55	-	3	-	3	0.0	0	
	14.22	두포천	13.54			11.4	377	288	665	0.4	266	
	10.71	운천천	10.71			11.2	246	235	481	0.4	192	
	21.28	설마천	19.61			10.2	353	244	597	0.4	238	
	22.44	사미천	20.62			8.1	359	138	497	0.4	199	
				석장천	20.61	12.2	547	223	770	0.0	0	
	22.58	장현천	21.96			1.1	27	205	232	0.4	93	
	23.99	간파천	22.54			7.5	231	239	471	0.4	188	
	30.75	황공천	28.97			13.1	473	279	752	0.4	301	
				노동천	34.92	6.1	201	154	355	0.0	0	
	33.37	차곡천	32.21			3.6	85	97	182	0.4	73	
	33.42	옥계천	32.33			10.7	238	147	385	0.4	154	
	30.76	죽대천	28.97			3.3	109	152	261	0.4	104	
	33.61	안월천	32.81			4.2	92	100	192	0.4	77	

	31.52	신천	37.32			15.0	473	-	473	0.4	189	
				홍죽천	89.67	5.6	132	-	132	0.0	0	
				효촌천	79.72	4.3	102	-	102	0.0	0	
				입암천	78.87	7.0	171	-	171	0.0	0	
				청담천	68.17	8.1	194	-	194	0.0	0	
				덕계천	74.28	1.93	47	-	47	0.0	0	청담지류
				회암천	68.52	8.4	198	-	198	0.0	0	"
				상패천	61.17	6.8	160	-	160	0.0	0	
				동두천	58.36	10.3	240	-	240	0.0	0	
				수동천	25.34	5.9	138	-	138	0.0	0	
				갈월천	108.2	0.4	10	-	10	0.0	0	수동지류
				대전천	33.33	1.0	23	-	23	0.0	0	
				석우천	83.95	6.8	159	-	159	0.0	0	
				우고천	87.39	0.2	6	-	6	0.0	0	
				연곡천	88.08	5.2	165	-	165	0.0	0	
				방성천	92.02	1.3	30	-	30	0.0	0	
	30.25	차탄천	30.16			5.2	121	-	121	0.4	48	
				마전천	83.46	1.5	38	-	38	0.0	0	
				답곡천	86.55	-	2	-	2	0.0	0	
				아미천	52.90	14.9	350	-	350	0.0	0	
소하천						128.0	2,243	-	2,243	0.4	897	
임진강	본류					30.0	838	322	1,160	1.0	1,160	
계						473.0	11,788	6,090	17,878		6,358	

주1) 정확한 분석은 각하천 종단도로 확인할 수 있음, 개략치임

주2) 임진강본류 100%, 제1지류와 소하천 40%, 제2지류 제외

주3) 본류1160,제1지류8499*0.4=3399,소하천2243*0.4=897총계:5456~6358억원

. 제4안의 모순점

.. 38.8km의 분수로 설치가 제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약19km 이하의 분수로 설치만으로도 가능함에도 분수로의 연장을 과대하게 계획을 하여 사업비(약 1조3천4백억원)를 부풀여 배척시켰다.

.. 만일 분수로 설치를 19~4.5km미만으로 계획하였다면 소요 사업비는 약9천억원 미만으로 경제성이 있어 한탄강댐에 비해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검토대상임.

<표3> 분수로(L=38km)의 개략 사업비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방 연장 (km)	사업비(억원)		계	본류 영향율	사업비	비 고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제방	교량				
분수로						38.0	11,324	-	11,324	1.0	11,324	
임진강	30.75	황공천	28.97			13.1	473	279	752	0.4	301	
	33.37	차곡천	32.21			3.6	85	97	182	0.4	73	
	33.42	옥계천	32.33			10.7	238	147	385	0.4	154	
	30.76	죽대천	28.97			3.3	109	152	261	0.4	104	

	33.61	안월천	32.81			4.2	92	100	192	0.4	77	
	31.52	신천	37.32			15.0	473	-	473	0.4	189	
	30.25	차탄천	30.16			5.2	121	-	121	0.4	48	
임진강	본류					30.0	838	322	1,160	0.25	298	
계						473.0	11,788	6,090	17,878		12,562	

<표4> 분수로(L=19km)의 개략 사업비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방 연장 (km)	사업비(억원)		계	본류 영향율	사업비	비 고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제방	교량				
분수로						19	5,662	-	5,662	-	5,662	
임진강	14.22	두포천	13.54			11.4	377	288	665	0.4	266	
	10.71	운천천	10.71			11.2	246	235	481	0.4	192	
	21.28	설마천	19.61			10.2	353	244	597	0.4	238	
	22.44	사미천	20.62			8.1	359	138	497	0.4	199	
	22.58	장현천	21.96			1.1	27	205	232	0.4	93	
	23.99	간파천	22.54			7.5	231	239	471	0.4	188	
	30.75	황공천	28.97			13.1	473	279	752	0.4	301	
	33.37	차곡천	32.21			3.6	85	97	182	0.4	73	
	33.42	옥계천	32.33			10.7	238	147	385	0.4	154	
	30.76	죽대천	28.97			3.3	109	152	261	0.4	104	
	33.61	안월천	32.81			4.2	92	100	192	0.4	77	
	31.52	신천	37.32			15.0	473	-	473	0.4	189	
	30.25	차탄천	30.16			5.2	121	-	121	0.4	48	
임진강	본류					30.0	838	322	1,160	0.43	500	
계											8,284	

<표5> 제4안(분수로 L=4.5m)의 개략 사업비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방 연장 (km)	사업비(억원)		계	본류 영향율	사업비	비 고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하천명	수위		제방	교량				
분수로						4.5	1,341		1,341	1.0	1,341	
임진강	21.26	가월천	19.56			7.7	251	188	439	0.4	174	
	21.28	설마천	19.61			8.2	276	-	276	0.4	110	
	16.21	눌노천	14.86			5.8	214	226	440	0.4	176	
	14.22	두포천	13.54			11.4	377	288	665	0.4	266	
	10.71	운천천	10.71			11.2	246	235	481	0.4	192	
	21.28	설마천	19.61			10.2	353	244	597	0.4	238	
	22.44	사미천	20.62			8.1	359	138	497	0.4	199	
	22.58	장현천	21.96			1.1	27	205	232	0.4	93	
	23.99	간파천	22.54			7.5	231	239	471	0.4	188	

	30.75	황공천	28.97			13.1	473	279	752	0.4	301	
	33.37	차곡천	32.21			3.6	85	97	182	0.4	73	
	33.42	옥계천	32.33			10.7	238	147	385	0.4	154	
	30.76	죽대천	28.97			3.3	109	152	261	0.4	104	
	33.61	안월천	32.81			4.2	92	100	192	0.4	77	
	31.52	신천	37.32			15.0	473	-	473	0.4	189	
	30.25	차탄천	30.16			5.2	121	-	121	0.4	48	
소하천						128.0	2,243	-	2,243	0.4	897	
임진강	본류					30.0	838	322	1,160	1.0	1,160	
계											5,800	

주1) 정확한 분석은 각하천 종단도로 확인할 수 있음, 개략치임

주2) 임진강본류 100%, 제1지류와 소하천 40%, 제2지류 제외

주3) 본류1160,제1지류8499*0.4=3399,소하천2243*0.4=897총계:5456~6358억원

6) 경제성 평가의 모순점

. 경제성평가의 목적

.. 『2,700톤/초 절감을 위해서 9,750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따지는 분석이 경제성 평가 목적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전술한 바와같이. 『홍수조절효과가 문산에서 2,700톤/초도 안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타당성은 더욱 없어진다.

. 경제성 평가방법

.. 한탄강댐의 홍수조절부분의 분담비율이 97% 이상이므로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서의 타당성을 먼저 분석한 후에 타당성이 인정될 때 추가로 용수공급, 발전등 목적추가에 따른 타당성을 분석해야 순서임, 금번계획에서는 3%비율밖에 안되는 용수공급용 편익을 미리 제한 후 홍수조절평가하여 합리화 시켰다.

. 경제성 평가시 용수공급편익 과대계산

.. 한탄강댐은 당초 다목적댐으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수도권(팔당)광역상수도의 물(시설의 45%이용)이 남아 한탄강유역 동두천, 포천, 양주, 파주 250,000톤/일을 공급계획으로 용수개발이 필요 없게 되었음

..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개발한다면 평화의댐 처럼 평시에는 댐으로 유입되는 전체량를 하류로 흘려보내면 유량조절이 필요 없으며, 수리권측면에서 전혀 변동사항이 없음, 단지 상류 수몰되는 취수장은 하류로 옮기면 되며, 유지용수도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임

.. 편법으로 20년 후에나 발생할 20,000톤/일의 공업용수를 포함시킴으로 한탄강댐에서 평시 유량조절을 유도했으며, 동시에 유지용수

220,000톤/일이 필요하다고 논리를 전개시켜 용수공급편익 5,200억원을 과장했음

.. 한탄강댐 총사업비 9,750억원중 대체댐(한탄강댐에서 유지용수,공업용수등을 공급을 받는 경우와 동등한 효과의 영평천댐)사업비 5,226억원을 뺀 순수한 한탄강댐 사업비를 4,524억원에 대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편익B/비용C=1.14로 산정 했다.

..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 다시 대체댐 사업비를 2,400억원으로 줄였으나 다른 변수들을 조정하여 B/C=1.12로 당초와 거의 동일한 값을 제시

.. 다목적댐들의 B/C가 1이상 나오기 힘든상황, 홍수조절댐이 1이상은 과장

<첨부5> 한탄강댐 갈등조정 작업계획(안) (정진승 단장 제안자료)

. 한탄강댐 갈등문제의 조정이 4월 중순부터 시작 예정임

. 따라서 지금부터 조정을 위한 학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정기간에 당면할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정기간 중 수행할 분야는 이해당사자의 선정, 이해당사자의 협상참여 유도, Ground Rule의 작성, 실질적인 조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분야별 검토 필요 사항]

1) 이해당사자의 선정문제

. 정 부

.. 이해당사자로 선정됨이 타당한가? 논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선정코자 할 경우의 예상 반대 논리와 이에 대한 설득 방안은?

.. 선정시 건교부, 환경부, 지방정부, 기초 자치단체 중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 정부간(중앙, 지방, 기초단체) 의견이 상이한 경우, 협상대상자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 하나의 이해당사자로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의 문제점과 대책은?

. 시민단체

.. 지역주민과는 다른 이해당사자로 선정됨이 타당한가? 논리적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필요

.. 선정코자 할 경우의 반대 논리와 이에 대한 설득 방안은?

.. 선정시 많은 시민단체(전국적인 시민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 중 선정 방안은?

...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이 지연될 경우의 대책은?)

.. 지역주민과 다른 하나의 이해당사자로 참여를 거부할 경우의 문제점과 대책은?

. 상류지역 주민

.. 지역주민의 정의는(거주자)?

.. 시민단체 등 특정 단체에 위임했을 경우의 문제점과 대책은?

.. 정치인, 기업인, 수몰지구 등 지역전반의 이해가 아닌 특정 group의 이해와 관련된 대표가 선정될 경우의 문제점과 대책은?

.. 주민 대표의 선정 과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선의의 참여 또는 지원이 가능한가? 이 경우의 문제점과 대책은?

2)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도문제

.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발굴과 대책

3) Ground Rule(Rule of Negotiation)의 작성

. 주요 요소

. 협의 방안

4) 조정의 진행

.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04. 2. 26(목) : 추진계획 협의 및 합의(역할 분담 포함?)지역 의견 청취

. '04. 3. 9(화) : 환경영향평가위원 의견 청취

. '04.3. 16(화) : 추진작업 점검 및 토의 정부 의견 청취

. '04. 3. 20(토) : 현장 방문

. '04. 3. 23(화) : 지속위 보고 추진작업 점검 및 토의

. '04. 3. 30(화) : 추진작업 점검 및 토의

. '04. 4. 12(월) : 조정위원회 구성

<첨부 6>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송영일 KEI 환경영향평가부장)

1.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임진강 하류유역인 파주, 문산지역은 저지대로서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나 임진강의 하천개수율 및 빗물펌프장을 포함한 내수배제시설의 설치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파주, 문산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2000년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원인분석 및 항구대책 수립(안)"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 계획에서는 최근의 강우패턴을 고려하여 임진강 하류의 설계홍수량을 당초보다 상향조정(16,200m^3/s→19,800m^3/s)하였음

. 설계홍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치수대책으로는 홍수피해 방지가 어려워 하천정비와 연계하여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의 건설이 계획되었음

2) 사업내용

. 총저수용량 : 311.3백만m^3

. 홍수조절용량 : 305백만m^3

. 홍수조절분담량 : 2,700m^3/s

.. 100년빈도 강우가 48시간 지속되는 경우 문산천 합류점에서의 계획홍수량(19,800m^3/s) 대비 13.6% 홍수조절효과

. 댐 연장 : 705m

. 댐 높이 : 85m

3)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 추진경위

. 2002. 1. 2: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환경부→KEI)

. 2002. 2. 18: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서 발송 (KEI→환경부)

. 2002. 7. 29: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접수 (환경부→KEI)

. 2002. 10. 9: 재보완의견 발송 (KEI→환경부)

. 2002. 12. 4~9: 한탄강댐 전문가 토론회 개최(환경부, 건교부, 수자공, KEI, 지역주민 등 참여)

. 2002. 12. 26: 재보완서 접수 (환경부→KEI)

. 2003. 4. 22: 추가자료 접수

. 2003. 4. 28: 원내 검토회의 실시

. 2003. 6. 13: 재보완서 및 추가자료 검토의견 송부(KEI→환경부)

. 2002. 1. 2. 평가서(본안) 접수 이후 협의의견 제출까지 약 1년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음

. 본 사업에 대한 검토업무 과정에서 보완의견 제출횟수(2회)는 타 사업에 비하여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접수된 보안서 등에 대한 검토시 다수의 회의가 개최되어 전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 특히 재보안서 접수 이후에는 검토시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동 기간 동안 원내검토회의,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의 등 약 10회 정도의 회의가 개최되었음

2. 주요 검토내용

1) 홍수분야

. 한탄강 유역의 홍수량산정의 적정성

.. 한탄강 유역의 홍수량을 실제보다 크게 산정함으로써 댐 건설의 당위성 뿐만 아니라 한탄강댐 지점에서의 홍수조절효과를 크게 나타냈다는 의문과 대안비교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반대측으로부터 제기되었으나,

.. 이러한 반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는 홍수량 산정은 일반적으로 댐 설계시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을 주장

.. 평가서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산정방법과 댐 건설 반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정방법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검토과정에서는 홍수량 산정 관련 계수적용 등에 대하여 2차례의 보완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 댐 설계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인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았음

. 대안비교의 적정성

..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고 특히, 제방증고 및 신설을 통한 홍수피해 경감대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방 보강시 공사구간 및 배수위 영향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평가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제방설치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사유로 2차례에 거쳐 보완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평가서, 보완서 등에 제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에 대한 비교를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한 이후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을 조건부 협의의견으로 제출하였음

... 제방증고를 통하여 홍수피해를 경감하는 경우 증고를 필요로 하는 제방의 연장이 초안, 본안, 보완서, 재보완서 등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음

... 또한 홍수시 배수위의 영향을 받는 하천구간과 제방증고를 필요로 하는 하천구간과의 부합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의 제시가 미흡함

2) 생태분야

. 댐 건설시 한탄강의 풍부한 종 다양성 유지 여부

.. 한탄강유역은 남한내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 이러한 지역에 댐이 건설되는 경우 유수생태계 자체의 구조 및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며 생물의 이동과 분산이 저해되어 주변 생태계의 변화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의 댐 건설은 지양되어야 하나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댐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방형댐을 고려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음

. 개방형댐 설치 가능 여부

.. 한탄강댐은 하류지역에서의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건설되므로 홍수기 동안 홍수유출량을 제어하는 경우 댐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댐 본체 하부에 배사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댐 설치지점의 수폭이 약 40m정도로 협소하여 배사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개방형 댐의 설치가 가능함(댐 설계 전문가의 자문결과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댐 하류에 현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고문보)가 설치되어 있어 배사구를 통과하는 하천의 수면을 고문보의 상단부와 일치시키는 경우 댐 통과시 낙차 없이 하천의 흐름이 유지됨

. 사업자가 제안하고 있는 개방형댐의 내용

.. 댐 하부에 설치예정인 배사구의 규모를 확장하여 하천의 흐름을 댐 건설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계획하였음. 개방시기와 관련하여 2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연중 5개월과 9개월 개방을 계획하고 있음.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연중 5개월 개방하되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9개월 개방을 계획하고 있음

.. 사업자가 개방형댐을 고려하면서도 연중 일정기간 동안 댐내 담수를 계획하는 사유로는 첫째, 일정기간 동안 담수를 실시해야만

다목적 댐 건설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둘째, 갈수기시 하류지역으로의 농업용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함임

. KEI가 제안하고 있는 개방형댐의 내용

.. 사업자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댐 하부의 배사구를 확장하여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공사 이전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현재 계획된 배사구의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배사구의 규모를 확장할 것을 요청하였음

.. 댐의 개방시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댐내 담수를 실시하는 경우 하천의 연속성 훼손 등 개방형댐의 설치의미가 퇴색되므로 연중 홍수기를 제외한 약 350일 동안 댐을 개방형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음

.. 홍수기를 제외하고 댐을 개방하는 경우 한탄강의 흐름은 댐 건설 이전과 동일하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하류지역에서의 농업용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댐 하류에는 이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보(고문보)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본 댐의 건설목적이 홍수조절이라 평가서에 명시하고 있어 하류지역으로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댐의 개방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적음

. 개방형댐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 한탄강댐 건설예정지 직상류에 현재 수력발전용 댐이 위치하고 있어 하천의 연속성이 이미 훼손된 상태이나, 한탄강댐이 건설되는 경우 동 댐은 철거되며, 한탄강댐이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존에 비하여 하천의 연속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댐내부로 오염원(중금속, 화약류, 유기물 등)이 유입되는 경우에도 축적되지 않아 양호한 하천수질 및 저질의 유지가 가능함

.. 한탄강 하천변의 주상절리 및 제인폭포 등 관광자원의 보전이 가능함

3) 토양분야

. 다락대 사격장으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한탄강 수질오염 여부

.. 다락대 사격장은 연중 200년빈도의 홍수 발생시 단기간(약 2주간) 수몰되며, 수몰되는 경우 사격장 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화약류 및 중금속 등 오염원이 담수호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

.. 현재 강우시 다락대 사격장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한탄강으로 유입되나 한탄강이 유수역이므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수질 환경기준이 초과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하여 한탄강이 정수역으로 변환되는 경우 각종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인하여 하천 저질은 물론 담수호수질도 저하될 것으로 예측

... 강우 이후 실시된 다락대 사격장 부지로부터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수로(하천)에 대한 현지측정결과에 의하면 수로(하천)수의 경우 Cd, Pb의 농도가 국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저질의 경우 Cd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

. 다락대 사격장 오염원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 현재 오염이 진행된 사격장 부지(표층)에 대하여는 식물상복원공법 및 생물상복원공법을 적용하여 토양정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 심층토양으로부터의 기저유출수와 초기우수에 의한 주변지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저류지를 설치할 것을 제안

<첨부7> 한탄강댐 추진현황, 그간 제기된 사항(건교부, 수공 설명자료)

<첨부 8> 한탄강댐 현장답사계획(행정지원팀)

. 목적: 갈등문제를 겪고 있는 한탄강댐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비공식)

. 일시: 2004. 3. 20. 9:00 ~ 21:00

. 장소: 임진강 하구, 댐건설 예정지, 한탄강댐 상류

. 인원: 준비단 위원, 행정지원팀 등 13명

. 안내: 엄두용 박사, (다락대사격장 6군단협조)

. 차량: 15인승 봉고차량

시 간	소요시간	일 정	비 고
9:00~11:00	120분	청사 → 철원고석정	준비차량
11:00 ~11:30	30분	수몰지상류부 답사(한탄강하구60km)	현지지형 숙지(협곡, 홍수시 수위), 댐반대 프랭카드 내용파악
11:30~12:30	60분	철원군 → 다락대사격장 인근 (이동중 한탄강지류 대교천 확인)	지류현황 파악 (홍수시 배수불량 주장지역)
12:30~13:30	70분	점심식사	
13:30~14:00	30분	다락대사격장 답사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
14:00~14:30	30분	다락대사격장 → 댐예정지	이동중 수몰지역 지형 및 프랑카드 등 주민주장 확인
14:30~15:00	30분	한탄강댐예정지고문리(고문교) 답사 (하구25km)	**댐건설예정지,** 직하지역에서 건설예정지 전망가능-협곡형지형특성 등 확인
15:00~15:20	20분	이동중 한탄강유원지 관찰 영평천합류후 지점	한탄강 하류지역 지형 및 홍수흔적 확인
15:20~15:40	20분	이동중 적성노곡리 비룡대교 임진강 중류지점 관찰(하구50km)	이동중 확인 임진강 본류 지형 숙지
15:40~16:10	30분	임진각 문산시 5km 상류지점 → 문산(하구18km 지점)	이동중 확인 하천부지 이용 형태 등 확인
16:10~17:10	60분	문산시, 문산천 답사	문산시내 입지, 지형특성과 문산천 제방 등 답사
17:10~18:10	60분	청사 도착	준비차량
18:10~19:30		마무리 및 식사	

<첨부9> 한탄강댐건설 관련 쟁점사안 정리(엄두용 박사)

.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개요

. 2000년 홍수피해원인분석 및 항구대책 수립안 등에 의거

. 댐 연장: 705m

. 댐 높이: 85m

. 총저수용량: 3억1천1백만톤, 홍수조절용량 3억5백만톤

. 홍수조절 분담량: 2700톤/sec

.. 100년빈도 강우가 48시간 지속되는 경우

. 문산천 합류지점에서의 계획홍수량(19800톤/sec) 대비 13.6% 홍수조절효과 예상

1) 철원지역의 주된 반대쟁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가능성

.. 댐내 취수시설이 없어 관계법령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아니며,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임.

.. 홍수조절이 주된 목적인 댐이지만 다목적댐으로서 추후 변경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여짐.추진계획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함.

.. 추후 용도변경의 가능성 여부는 임진강댐 종합치수대책 상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진강댐 치수대책 협력안의 성과로 북한 측에 댐건설이 가능할 경우.

. 홍수피해가중의 위험성

.. 댐수면과 40미터 이상의 낙차가 있어 배수불량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짐

. 안개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여부

.. 담수기간이 최대 15일이고, 담수시기도 홍수기이므로 안개피해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2) 한탄강네트워크의 문제 제기 사안

. 본류인 임진강에 건설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댐건설효과 과장되어 있음

.. 기술적 검토사안

.. 본류의 댐사이트는 군남저수지 이외에는 적지가 없음.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최적대안임.

. 수몰지역내 다락대사격장 – 수질오염과 오발사고로 인한 댐안전성 문제

.. 사격장 수몰로 인한 중금속 및 화약류 오염 발생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일정정도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사격장 오발사고시 댐안전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나, 오발사고의 가능

성은 극히 낮고, 만일 포격에 의한 오발사고시에도 콘크리트 댐이므로 국부손상에 그칠 가능성이 큼

. 다른 대안, 제방증축, 방수로 건설 등 대안이 있음

.. 검토필요성 있음

.. 대안검토는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요구시 대안검토를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임.

. 경제성 부족 문제

.. 치수대책으로서 댐건설의 필요성 여부가 문제임.

.. 임진강유역 치수종합대책의 일환이므로 전체 사업의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사암임.

. 기초지반 부실 문제

.. 현무암지대로서 기초가 부적격함

.. 제주도의 현무암과는 다른 조성으로 댐기초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음.

3) 추진절차의 문제점

. 정상적인 추진절차

.. 임진강수해원인조사 및 대책→한탄강댐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업자선정

. 한탄강댐 실제추진

.. 한탄강댐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신청→임진강수해원인조사 및 대책→실시설계 및 시공업자선정→환경영향평가조건부승인

. 그릇된 추진절차로 발생된 문제점

.. 발주시기는 동일하나 한탄강댐건설을 기정사실로 하여 한탄강댐 기본설계용역을 가장먼저 준공했고, 용역사도 각각 달라 가장 기초자료인 확률강우량이 서로 다른 값을 사용

. 추진절차로 발생된 문제점의 해결

.. 2000.12월 100년 빈도강우량 471mm→2002년3월 기본계획보완보고서에서 520mm로 증가→최종 568mm를 적용(21%증가)시켜 한탄강댐에서의 조절효과를 2,560톤/초→2,880톤/초로 바꿔 문산지방의 2,700톤/초를 합리화시킴.

... 추후 시정되었음, 강수량 증가는 강수량 측정장소의 증가와 점강우량을 면적강우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커진 것으로 여겨짐.

... 추진절차상의 문제점은 계속 쟁점이 될 소지가 있으며, 대안검토의 적절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4) 기술적 사안에 대한 쟁점

. 홍수량산정과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쟁점

.. 반대측 주장

... 홍수조절효과 분석의 기본

.... 댐을 쌓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댐유역 이외의 다른 유역도 동일조건하에서 계산해야 옳다. 그러나 한탄강댐의 홍수량은 키우고, 다른 유역은 상대적으로 줄여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를 과대포장했다.

.... 한탄강댐 건설의 목적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문산지역에서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수공측은 “한탄강댐을 막아 2,880톤/초(4,850중 1,970방류)의 유량을 절감시켜 내려보내면 유역면적의 6배나 큰 문산지점에서 2,700톤/초이 절감되며, 이러한 량은 문산지역의 홍수량 19,800톤/초 중 13.6%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에 사용되던 방식(Myer-Gariss)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된 시절의 공식이고, 새로운 이론에 의해 정밀분석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주장이다.

.. 홍수량 산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측과 반대측에서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정방법상의 무리는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최대 13.5%라는 주장과 6-7%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계산 방법과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여겨짐.

... 이와 같은 기술적 논쟁사안은 치수효과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댐건설 여부에 대한 핵심은 아니며, 대안검토와 댐건설 반대주장의 반대이유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대안비교에 대한 쟁점

. 대안 비교

.. 크게 3개의 안(제방 및 하도개량, 댐건설, 분수로)에 대해서 검토, 댐건설이 가장 타당한 안으로 선정하였음

구분		제1안 (하도)	제2안 (하도+댐+ 농경지저류)	제3안 (하도+댐+ 조절지)	제4안 (하도+분수로+ 농경지저류)	제5안 (하도+댐+ 분수로)
사업개요	제방증고	L=473km, h=2.2m(평균)	L=12km, h=0.6m	-	L=16km, h=0.9m	L=11km, h=0.4m
	하상준설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1,700만 m3
	한탄강 다목적댐	-	v=3.05억톤, Q=2,700cms	v=3.05억톤, Q=2,700cms	-	v=3.05억톤, Q=2,700cms
	분수로	-	-	-	L=38.8km	L=38.8km
	천변저류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농경지저류	-	3개소	-	3개소	-
	군남 홍수조절지	-	-	v=0.46억톤, Q=700톤/초 조절	-	-
사업비(억원)		17,870	11,497	12,059	13,392	22,182
채택여부				채택		

. 제1안의 모순점 - 반대측 의견

.. 한탄강댐 하류 본류 하천 총연장 60km임에 비해 2000.12 보고서 초안은 제방연장 536km, h=2.2m로 산정 무언가 틀렸다고 문제 제기, 2002.11월 보완보고서는 제방연장 473km로 수정, 다시 틀렸다고 근거를 제시하자 , 2004년 현재 다시 수정보고서를 냈다고 함

.. 사업비의 상당량 부풀려짐, 100년빈도 홍수에서 본류는 기존제방의 부족부분과 본류에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 일부만을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부분의 제방공사비를 포함하였음. 본류 제방 및 교량 사업비100%, 제1지류 제방 및 교량 사업비와 소하천사업비 40%, 제2지류사업비를 제외하면 6,000억원 내외임

... 대안비교 문제에 대한 쟁점정리: 제방보강시 공사구간 및 배수위 영향권 등에 대한 내용이 부실

... 방수로길이 축소 안 : 임진강 중류의 하폭이 적정폭보다 좁아 홍수시 급격하게 수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39km의 분수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문산을 중심으로 15-5km의 분수로 안도 검토가 필요한 대상일 것임.

... 댐건설과 분수로 건설 공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대안비교는 양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정밀조사 등 고려가능할 것임

<첨부10> 한탄강댐건설 추진과 반대 갈등이해당사자 간별(허상수위원 발표자료)

1) 이해당사자 간별

.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를 정확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가 댐건설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여부를 가려내어야 양자간의 대화나 타협, 조정이나 중재를 권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하거나 들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과정에서 왜 이해당사자(Stakeholder) 분석이 중요한가?

. 이해당사자들은 어떤 이슈나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와 이해관계, 그리고 권력과 지식과 스킬들을 가진 사람, 그룹, 제도들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서는 모든 시민들은 적절하게 이해당사자들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당사자로 둘 수는 없다. 그 경우는 비실용적이다.

.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이해관계? 표면적 주장과 내심 관철하려는 진짜 요구?

. 집단적인가 아닌가? 대표자는 집단의 이익을 얼마나 잘 대변하며 신뢰를 갖고 있는가?

. 협상 당사자로써 신의성실의 의무와 권리를 잘 숙지하고 있는가?

2) 이해당사자 분석의 기준

. 무엇보다도 1차 이해당사자(잠재적이거나 가시적인 이해관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이해를 나타내는 사람--주민, 농민 등)와 2차 당사자(중간적 관계에 있는 부문으로 자금제공, 집행, 모니터링, 홍보조직, 정부 등--정치인, NGO, 지방지도자 등)를 구별해야 한다. 제도내의 어떤 주요인사는 1차(개인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제도의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양쪽 범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

. 이들을 다음 기본 범주별로 프로필: 기본 인구정보(성별, 빈부, 연령대, 출신지 등), 소재(거주지, 현장과의 거리 등), 소유관계(소유자, 임대차, 수요공급관계, 경영자/실무자, 조직원 등), 기능과 역할(생산자/소비자, 정책입안자/활동가, 여론주도층/추종층 등), 규모(대/소규모 등), 시제(과거, 현재, 미래)

. 이해당사자 식별 주체에 따른 분류 방식

.. 주요기관의 실무자에 의한 식별

.. 문서자료와 인구자료를 통산 식별

.. 이해자신의 선택에 의한 이해당사자 식별

..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해 식별되고 검증되는 방식의 식별

. 이해당사자 대표성

.. 아이덴티티와 책무성(accountability)

.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관계들과 권력들

.. 이해당사자의 동기화와 이해관계

.. 당사자의 권리와 자원, 그리고 동기화와 이해를 추구하는데 유용한 다른 수단과 권력들

.. 분석방법(머리 맞대고 떠들며 말하기-브레인 스토밍, 반-구조화된 면접, 기존 자료들 깊이 파기, 타임라인, 다이어그램 그려보기, 당사자에 대한 생계분석 등)

. 당사자들간의 관계망 분석

.. 관련성의 기능

.. 관련성의 강도

.. 관련성의 공식성

..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존도

.. 관련성의 질

. 당사자들의 권력분석

.. 권력의 상대적 정도, 권력의 원천, 권력이 행사되는 수단

3) 구도

. 댐 건설반대

.. 철원지역 거주민(수몰, 개발에 대한 피해의식, 상수원보호/수변지역 지정,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댐 건설 이외의 다른 대안을 통해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한 협상을 시도)

.. 한탄강네트워크(입지의 부당성, 사격장으로 인한 수질오염/토양오염, 안전성, 다른 대안 고려 등)

. 댐건설 추진

..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공익성을 일부 포함한 조직보존논리, 홍수피해 이전에 댐 건설계획)

. 댐건설 수용

.. 수몰예상지역 거주민(보상금, 이주 등을 위해 조속한 결정을 요구), 지역자치단체/개발부서

. 댐건설 유보('지금상태로 그냥 간가.', 시간 끌기)

4) 한탄강댐 건설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분포

. 건설론

.. 정치인

... 포천시 시장 박윤국(지역 발전의 계기로 인식)
... 연천군 군주 김규배
... 강원도 도지사 김진선
... 철원군 부군수 문경현
.. 공사 발주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치수대책으로 필요)
.. 지역주민
... 수몰대책위 위원장 김준문
... 연천지역 주민대표 홍순각
... 포천지역 주민대표 이수인
. 중립적 입장
.. 정치인
... 포천, 연천 국회의원 이한동
. 댐건설 반대론
.. 정치인
... 철원, 화천, 양구 국회의원 이용삼(지역여론 의식)
... 강원도 도의원(철원지역) 구인호(지역여론 의식)
... 철원군 의회 의장 장진혁
... 철원군 이장단 협의회 회장 황희로
.. 주민, 시민사회
... 한탄강 네트워크 총무팀장 이우형
... 한탄강댐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김동일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염형철

<첨부11> 조정 프로세스에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박수선위원 발표자료)

1) 현재 갈등분쟁 상황

. 96, 98, 99년 홍수에서 문산, 파주지역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본격적 추진을 시작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분쟁 대립이 극대화되다가 2003년 12월 대통령의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제기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승복이 전제된다면 재검토할 수 있음' 과 이 문제에 대한 지속위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로 현재 댐 건설과 관련된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임.

2)갈등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입장

. 건교부, 수공: 대홍수의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댐건설이다.

. 한탄강댐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철원 주민과 연천 포천의 수몰세대를 제외한 주민들): 홍수조절은 명분일 뿐이다. 절대로 댐건설은 안된다. 댐건설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통계수치를 조작한 건교부의 몰염치한 비도덕성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연천, 포천 수몰주민: 빨리 결정하고 계획대로 실시하고 보상하라.

. 환경단체 등: 댐 건설은 환경친화적인 대안이 아니다.

3) 배경 및 당사자들의 실익, 욕구

. 건교부, 수공

.. 현재 용수공급 등 여러 용도로 전국적으로 계획중인 댐 건설 계획중 하나인 한탄강댐 건설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업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한탄강 댐 건설이 순조롭게 되어야 다른 사업도 잘 될 것임)

.. 국가기구로서 권위손상에 대한 우려(계획된 정책을 반대로 중지한다면 국가권위가 손상될 것이다.)

.. 사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이익

. 철원주민

..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불신(절차 무시, 댐건설로 수혜를 입는 일부 관계자들의 이해에 기반한 건설임)

.. 군사보호구역으로 많은 규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댐 건설로 규제를 더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피해의식(삶의 질 문제)

..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다락대사격장, 댐 붕괴, 홍수피해 가중 등)

. 연천, 포천 수몰주민: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

. 환경운동단체: 현재는 주요한 당사자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잠재적 당사자 및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한탄강의 지역적 특성(주상절리, 동굴, 경관 등) 보호해야 한다.
.. 어류, 조류 등 희귀생물 보호
..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 요구

4) 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입장
. 건교부, 수공: 대통령의 지시에 절대적 동조. 그러나 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부족
. 철원 반대주민: 한탄강 댐 문제는 민과 관의 갈등이 아니라 잘못된 댐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지속위에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만들어낸 것으로 조정의 사안이 될 수 없다. 조정에 대한 이해 없음.
. 수몰주민: 빠른 시간에 결정되어 보상받기를 원함. 조정에 대한 이해 없음.

5)조정과정의 시작의 어려움
. 전반적으로 조정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부족
. 반대주민의 경우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 결과적으로 백지화 선언이 아닌 조정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 강함.

6) 쟁점 및 해결(논의)되어야 할 사안들
. 주민들의 정부(건교부)에 대한 깊은 불신
.. 불신의 원인
... 댐건설 진행 절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건교부, 수공: 합법적 절차를 통한 과정이었다.
.... 철원 등 반대주민: 댐 건설을 전제한 절차였다.
.... 댐 건설 시기를 보는 관점의 차이
..... 반대: 1996. 6 임진강 유역 조사, 1998. 12 수도권 수자원(한탄, 연평천댐) 개발계획 수립. 댐 설계용역이 수해원인 및 대책 수립 용역보다 먼저 이루어짐.
..... 수공, 건교부: 99. 12 수해방지종합대책으로 임진강유역 홍수조절용 댐건설 추진 결정.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시간상 댐설계가 앞섰던 것.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급박한 진행.
...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견해의 차이
.... 반대: 주민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
.... 수공, 건교부: 다양한 협의과정을 거쳤음(환경영향평가 고시, 전문가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 홍수조절을 위한 방안 모색

7) 조정프로세스에 당사자 참여 방안-단계별 접근 방법

. 현재-본격적 조정 준비 전

.. 언론홍보

... 지속위의 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홍보/지속위

... 사회갈등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조정의 의미 관련 기고를 통한 홍보/관계 연구자

.. 목표 및 내용

... 중립적 조정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줌(일반시민과 한탄강 댐 관련자들 모두에게)

... 사회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지속위가 갈등관리역할을 새롭게 하려는 데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

.. 리플렛 제작, 배포

... 지속위의 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 조정 준비 과정

.. 조정프로세스와 참여방법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방법: 참여요청 공문

.... 당사자 대표체 직접 접촉 간담회(철원대책위, 이장협의회, 군의회, 연천새마을지도자회 등 순회 방문)

.... 주민대상 설명회/경기도, 강원도 등의 관과 함께, 또는 분리해서

... 내용: 조정이란 무엇인가? 어떤 과정과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는가?

.... 조정 프로세스의 장점, 조정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

.... 조정참여방법(대표 선출을 어떻게, 대표와 지역민과의 의견수렴과정은 어떻게 등등)

.. 조정프로세스에서의 쟁점 정리 및 공동체 협동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워크샵 지원

... 방법: 당사자별 워크샵 개최 제안(조정역할의 지속위 위원 참여)

... 내용: 조정프로세스에서 주요 논의되어야 할 당사자별 쟁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이때 각 당사자별 그간 갈등분쟁의 초점이 되어왔던 것에 변화를 꾀함.

.... 건교부, 수공: 한탄강 댐 건설→주민의 불신해소, 공신력 확보

.... 대책위 등 반대주민: 댐 건설 반대→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 강화

.. (가능하다면) 이해당사자 함께하는 신뢰구축 워크샵 개최

... 조정 프로세스의 준비과정으로 당사자들간의 그간의 불신을 줄이고,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공동워크샵을 개최한다.

... 주요 내용: Community Building과 조정과정의 쟁점 일치를 꾀함 (조정과정의 핵심 과제를 '임진강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으로)

.. 지역언론 홍보(지역의 여론 환기)

8) 조정프로세스는?

. 갈등 당사자들이 자율적 의지로 참여해서 대화, 중립적 사실조사 등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여러 방식을 통해 갈등분쟁을 논의, 해결해가는 것.

. 조정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간 의사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임.

. 당사자들은 단지 의견을 내는 것뿐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주체임.

9) 한탄강 조정프로세스

. 갈등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해결해야 할 쟁점을 결정하고, 그 해결의 방식와 절차를 합의한다.

. 합의된 절차에 따라 문제해결과정을 진행한다.

.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 지속위 본회의에 회부, 대안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10) 조정프로세스에 참여하면?

. 건교부, 수공

.. 댐건설 또는 정부정책사업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방적이고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결정과정을 만들어감으로써 시비가 많았던 건교부 추진사업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고, 건교부 사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이미지 쇄신)

.. 한탄강 조정프로세스에 참여, 성과를 얻으면 앞으로의 여러 사업에서 소모적 논쟁과 대립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현재의 소강상태를 돌파하는 계기가 된다.

.. 앞으로의 주민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주민합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반대주민

.. 현재 소강상태인 문제를 직접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주민들의 이해관계,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정책결정을 함께 합

의해서 할 수 있다.(단지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서의 의미임)

.. 홍수조절을 위한 방안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 정책결정과정에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역이기주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 등의 오명과 비난에서 벗어나 적극적 주민참여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의 원인제공자(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공공선의 방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 반대, 지연을 통해 댐 건설을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현재의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생각하도록 해서 지연책보다는 적극적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또한 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이 아닌 지속위의 결정에 따르는 절차로 이해)으로 조정 프로세스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게 되면 참여 가능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은?

... 대치가 장기화될수록 반대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소극화될 수 있다.

... 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임진강 수해대책으로서의 방법을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조정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결정을 함께 하지 않으면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건교부와 장기적인 갈등분쟁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 절차의 무시와 불신을 주요 반대이유로 내세웠는데, 그 절차를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반대의 명분이 없어지고, 무조건 반대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어 사회적 여론에 불리해진다.

. 찬성주민(연천 등 수몰주민)

.. 현재 소강상태인 문제를 직접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주민간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정책결정과정에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에 기반한 결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첨부12> 협상원칙(Groundrules)(이선우위원 준비자료)

1) 조정자의 역할은 갈등당사자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임.
   . 판사나 변호사 등 어떠한 공권력이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조정자 수는 두 명이 함께 조정과정에 주로 참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별도로 투입되기도 함. 예를 들어, 합의회의나 공론조사 등의 특정한 방법이 활용될 경우임.
2) 비공개성 및 비밀보장
   . 조정자와 조정자 소속기관은 갈등조정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함
3) 조정 과정 중에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동의
   . 예의
   . 존중
   . 인신공격금지
   . 욕설금지
      .. 서로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적인 언행을 삼가도록 하자는 약속을 함.
4) 조정진행방식에 대한 합의
   . 동일한 발언기회 및 시간
   . 동일한 반론기회 및 시간
   . 발언순서결정
   . 참석 인원결정
   . Caucus 허용
      .. 발언의 순서, 기회, 시간 등에 대한 합의, 발언순서 정하기 규칙 설정, 상호 동일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가짐, 상대의 주장에 대한 동일한 반론의 기회와 시간을 가짐,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데 대한 합의, 전체진행과정에 대한 합의, 협상참석자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룸.
      .. Caucus란 조정과정 중 조정자의 판단에 따라, 또는 개별 갈등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자와 개별 갈등당사자간 회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 조정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갈등당사자들이 요청할 수 있음. 어느 경우이든 Caucus를 조정자로부터 요청받지 않은 갈등상대나 Caucus를 요청하지 않은 갈등당사자는 그 Caucus에 참석할 수 없음. Caucus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Caucus에 참석한 갈등당사자의 허락이 없이는 조정과정에서나 갈등상대와의 Caucus에서 알려주어

서는 안 됨. 조정자는 Causcus를 A라고 하는 갈등당사자와 가졌으면, B 라고 하는 갈등당사자와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회수 만큼의 Caucus를 가져야 함.

5) 메모

. 조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조정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메모를 할 수 있음을 주지. 따라서 조정과정 중 조정자가 메모하는 것은 갈등당사자 진술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긍정 또는 부정 의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진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것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함.

6) 조정을 위한 한 Session 시간과 총 Session 회수

. 시간에 대한 압력을 주지 말 것

. 전체 조정과정을 소화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공지는 필요 없으며, 갈등이 해소될 때 까지 계속됨을 인식시켜야 함

. 한번에 몇 시간할 것인지, 또는 쉬는 시간은 몇 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

. 예: 대체로, 한 session을 8 시간으로 보며, 8 시간 내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

. 따라서, 조정 시작 전, 당일에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을 정하여 다시 만날 것임에 대한 동의를 구함

. 한 session 내에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갈등당사자들이 헤어지기 전에 다음 만날 날짜,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약속하여 둠

. 예: 쉬는 시간과 조정의 지속시간은 조정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정함. 미리 정하게 되면 시간에 쫓기거나 맥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음

7) 증거자료 활용방법

. 각각의 갈등당사자들은 자신의 발언 시간이나 반론시간에 어떠한 증거자료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림. 법정과는 다르게 어떤 증거는 되고 어떤 것은 아니 되는 규칙은 없으며, 갈등상대방도 함께 그 자료를 볼 수 있음도 고지함

8)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합의

.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의견차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대안을 개발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에 합의

9) 합의안 작성에 대한 정보제공

. 갈등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은 정리되어 갈등당사자들과 조정자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나누어가질 것임을 고지

. 만약, 합의안이 다소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공증을 받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고, 당사자들 모두 공증을 원한다면 이 사실을 사전약속 내용에 포함하고, 원하지 않으면, 합의안 작성 후 다시 논의토록 함

10)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작성

<첨부13> 한국의 물 정책 평가, 과잉개발과 물의 위기[1](염형철 환경운동연합국장 발표자료)

1) 성장과 개발 시대의 한계

세계 31개국에서 10억 이상의 인구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30억명 이상이 제대로 된 하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한국에서는 과도한 예산과 개발로 물의 순환이 어지럽혀지고, 생태계는 망가지고 있다.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해양부 등에 의해 매년 10조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만도 태풍 '루사' 와 태풍 '매미' 피해 때문에 각각 9조원과 7조원의 수해복구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국민들은 더 편해지거나 안전해지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인구는 1%를 밑돌고, 수해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생태계는 황폐화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89년 '두산전자' 의 중금속 배출사건으로「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수질개선에만 20조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한국은 여전히 수해에 취약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단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댐을 쌓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하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하천을 제방 속에 가두는 공사를 벌이는 일' 에 총력 매진해 왔다. 토지 효율의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하천부지를 메우고,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도시를 위해 댐과 관로를 늘이고, 시설과 기계를 설치하여 하천을 더 쉽게 완벽하게 조작하느라 반복해서 투자하는 것을 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건교부 수자원국, 환경부의 상하수도국, 행자부 방재국 등에 자리 잡은 건설역군들은 공학과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엄청난 예산과 시설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개발과 성장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이었고,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은 의심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물 정책은 한계에 달했으며, 근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사회가 충분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고, 위생에 무리가 없는 장치를 완성한 것은 업적이지만, 이들이 지금껏 투자한 비용에 걸맞는 성과인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수리시설들의 효과와 가동율은 공개하기 부끄러운 수준인 반면, 반환경적인 물정책의 폐해는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물 환경의 지속가능성, 시민의 정책참여, 행정의 민주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각한 낙제 수준이다. 이 글은 한국 물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몇 가지

1) 이 글은 3월 27-28일 제주에서 진행된 지구시민사회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2) 과잉 개발과 정책 실패의 사례

<실망스러운 댐의 효과 >

한국에서 댐은 '홍수를 막고, 가뭄을 이기고,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공급하고, 관광지를 제공하는 전지전능한 존재' 로 평가받고 있다. 광폭한 야성의 자연을 양순한 인공물로 만들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국제 대형댐 위원회(ICOLD)' 의 명부(2002년)에 1,214개의 대형댐[2]을 등록해, 댐 숫자로 세계 7위이자 국토면적을 반영한 댐 밀도로는 단연 1위인 댐 강국을 달성했다. 지금도 건교부는 27개의 댐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고[3], 농림부는 10년간 2,451개의 농업용 저수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4].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댐의 성적표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

<표 1> 한국의 댐 건설 현황[5]

구분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댐	홍수조절댐	계
1910-1965	1	12	5	399	-	417
1966-1975	1	12	2	181	-	197
1976-1985	2	13	4	247	-	266
1986-1995	5	13	4	187	-	217
1996 이후	6	20	6	100	1	117
계	15	63	21	1,114	1	1,214

우선, 건교부는 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의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연평균 1,323억원, 1980년대 3,554억원, 1990년대 6,288억원으로 끊임없이 늘어났고(1995년 기준)[6],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댐을 건설하였지만 도리어 홍수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홍수 때 유출되는 499억톤의 물 중에서 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양은 겨우 5%(24억톤) 정도여서,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한정적임에도 댐의 효과를 과장해 하천변에

2) 국제대댐회(ICOLD), 1998, 『World Register of Dams』,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는 대형댐의 기준으로 높이(15m), 방류량(2천톤/초), 저수지 체적(1백만톤), 댐 상부 길이 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으나, 한국은 높이 15m 이상을 대형댐으로 정의해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최근 자신들이 발표한 댐 중 1억톤 미만을 중소형이라고 주장하며, 개념을 혼동시키고 있다.

3) 건교부, 2002, 「댐건설장기계획」

4) 농림부, 2001, 「3차 농촌용수 10개년 개획」

5) 이희승, 2001, '댐사업 국내외 동향', 『댐 사업 국제 동향과 우리의 선택』

6) 건설교통부,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게 한 탓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매년 가뭄소동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성금을 모으면서 댐의 필요를 들어왔다. 하지만 식수공급 차질, 모내기와 파종의 지체, 농작물 고사 등에 의한 가뭄 피해액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7]. 가뭄 피해 지역으로 소개되는 완도, 남해, 제천 등은 섬이나 산간의 고지대들이어서, 1,214개의 대형댐과 17,956개의 저수지[8]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들이다.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공포는 과장된 허구일뿐, 한국의 기상 특징에서 비롯된 일부 지역의 계절적인 물 부족은 댐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는 건교부가 추진하는 27개의 댐계획과 농림부가 2014년까지 추진하는 1000여개의 댐이 들어서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셋째, 수력발전이 대안의 에너지이며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사가 급하고 강우가 집중되는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력발전은 불가능하다. 2001년 전체 발전량 285,224GWh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인 4,151GWh에 불과했다[9]. 물론 전력공급과정에서 첨두부하를 관리하기 위해 수력 발전이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력발전을 위해 댐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 수력발전을 하더라도 굳이 댐을 짓지 않는 소수력 발전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니, 대형댐 건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댐이 전체 물 사용량 331억톤/년의 40%에 해당하는 133억톤/년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랑한다[10]. 하지만 이 때 133억톤은 댐에서 취수하는 양일뿐 기왕에 취수해 왔던 양을 빼고 나면, 약 50억톤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상의 50억톤이 도시문명의 존재를 가능케 한 기반시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이상의 댐을 짓기 위해 댐의 효과를 과장하고 천문학적 건설비용[11]과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자는 주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댐계획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2011년까지 12억톤(전체

---

7) 언론사들의 단편적인 추측은 있으나, 주무부서인 농림부나 행자부 등에서는 따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피해액 산정도 어렵지만, 온 나라가 난리를 치는 이유라기에는 금액이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01년 가뭄에 따른 농가 직접 보상은 30억원 정도였다.

8) 농림부, 2001, 「3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보완)」

9) 한국전력 홈페이지 자료실, '2001년 발전량 통계'

10)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1, 「2001년도 물 관리 통계 자료집」

11) 최근 논의 중인 한탄강댐의 비용은 무려 9700억원이다.

사용량의 3.5%)이 부족할 것이라며, 27개의 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10년 동안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20%씩 늘어나고, 인구가 6.7% 증가하며,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농업용수는 더 필요하고, 농촌용수공급계획에 의한 공급량은 누락시키는 등 허술한 계산이 그들의 근거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1980년 이후 1인당 물 사용량은 도리어 11%나 줄고, 인구증가를 감안하더라도 9개국에서는 총취수량조차 감소했다[12]. 한국에서도 1997년 1인당 하루 물 공급량이 409리터에 달했으나, 2002년엔 374리터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13]. 물 절약 의식의 발달, 물 이용 기술의 발전, 재활용의 확산, 송수관 누수 감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 수요를 위해 앞으로도 댐을 더 세우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위의 자료들에 따르면 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연현상은 극히 일부이며, 댐이 가져온 편익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반대로 댐에 의한 피해는 감춰졌으며,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댐 건설부서와 기술자 그리고 업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주장 대신, 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의 댐건설 강행정책은 새롭게 점검되어야 한다.

<물의 순환과 유역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 정책>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도 태풍 ‘매미’에 따른 가공할 피해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한탄강에서, 지리산에서, 서울 중랑천과 탄천에서 연례행사로 반복돼, 국민들은 모금과 복구지원으로 고달펐다. 하지만 방재 책임자들은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탓하고, ‘댐과 제방 그리고 배수펌프 증설’이라는 대책을 내 놓을 뿐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반복되는 장면들은, 이 땅에서 수해로 고통받는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화된 수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낙동강의 현황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환경연합이 태풍 ‘매미’ 피해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해는 부적절한 토지이용과 과도한 자연의 왜곡 때문이다. 낙동강 유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습지의 90% 이상을 농지로 전용하여 하폭을 크게 좁히고, 하천을 직선화해 상류의 강우를 순식간에 하류로 몰아 하류의 침수를 유도했으며, 하구둑 등 무분별한 하천 구조물들을 설치해 홍수가 바다로 배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원인이었다. 덕분에 낙동강 본류의 수위는 비가 오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하여, 주

12) OECD, 2001, 『OECD Environmental Outlook』,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번역

13) 환경부, 2002, 「상수도 통계」

변 농경지나 지류의 수위보다 보다 10m 이상 높은 상태로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제방과 지류의 갑문을 위협하게 된다. 결국 2002년 태풍 루사에 무너진 제방을 더 높고 탄탄히 쌓아 올린 덕분에 낙동강 본류는 무사한 했지만, 2003년에 태풍 매미때는 본류의 엄청난 홍수가 도리어 수위가 낮은 지류로 역류해 지류의 제방을 부수고 인근 농지를 침수시켰다. 이는 하천부지를 정복해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 인간중심주의의 물 정책이 홍수를 부른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천개발은 꼭 낙동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전국의 하천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기후를 반영하지 않는 채 마련된 개발 계획은 우리 국토 전체를 홍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와 하천 직선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소하천들이 포크레인의 삽날에 파헤쳐지고 두터운 시멘트로 뒤덮이고 있다. 이는 상류까지 하천생태계가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류의 홍수를 더 빠른 시간에 하류로 밀어내어, 하류의 홍수를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홍수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예산부족을 타령하고 있다[14].

태풍 루사가 지나고 강원도의 주민들은 “강이 제 물길을 찾았다” 고 했고, 태풍 ‘매미’ 로 마산이 침수되면서 시민들은 ‘바다는 여전히 매립지를 바다로 알고 있다’ 고 했다.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발로 넓어진 땅을 보며 기특해 하고 있었지만, 수백km에 걸쳐 쌓은 만리장성(제방)도 개발된 모든 공간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는 홍수를 하천이 범람하여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배척하고 있지만, 이는 오만한 인간의 편견일 뿐이다. 인간이 하천을 제방으로 가두고 홍수를 그 안에 유폐시키면서, 강바닥은 높아지고, 수질은 악화되었으며, 골재가 사라지는 등 하천이 가져왔던 유용함이 사라진 것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낡은 길을 버리고 샛길을 택하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홍수)’ 이 사라짐으로서, 현대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홍수를 제거해야할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이제라도 하천의 길을 열어주고, 바다의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하천에 다 제방을 쌓는 방식보다는 사람이 사는 곳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농사를 짓는 과거의 습지들은 큰 물이 졌을 때 가끔 열어줘야 하고, 상습 침수되는 원래의 습지는 자연에 되돌리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과 더 과감한 개

14) 정부는 곧 방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액의 80% 이상이 수해에 의한 피해이므로, 방재청의 신설은 하천에 대한 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 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하천정책' 이다. 더 조밀한 댐, 튼튼한 제방, 줄줄이 늘어선 양배수장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자연의 선택을 존중하고 물의 순환을 이해하는 하천정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콘크리트로 싸 바르는 하천 정비 사업의 중단, 홍수터의 확보, 하구둑 등 홍수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들의 해체, 도시지역에서는 불투수성 토지의 복원과 녹지 조성, 빗물 재활용 등 유역차원의 총체적인 홍수 예방 정책 등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아직도 길이 너무 멀다. 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 조사를 단지 3일만에 끝내고, 수해복구 계획과 수해복구예산까지 마련해 일사천리로 과거의 복구를 답습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과 언론의 재촉을 근거로, 눈먼 국가예산을 탐하는 지방정치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속복구', '원상복구'를 실천하고 있다. 무지한 국토개발정책이 국토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토목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시설 중심의 수질정책>

1989년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 사건 이후 하천의 오염과 수돗물 파동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정부는 1989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1994년 『수질관리개선대책』, 1996년 『물관리 종합대책』등 세 차례나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02년까지 이미 20조원을 투자했다. 지금도 (환경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지방양여금을 포함하여) 환경부 예산 2조 7천억원의 60% 이상이 상하수도를 위한 토목과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로 2002년에는 상수도 보급율 88.7%[15], 하수도 보급율 75.7%[16]를 달성했으며, 이 비율은 2010년까지 각각 95.6%와 85%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렇듯 수질정책 또한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근본이다. 비료와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농법, 막대한 토사를 유출하는 고랭지 농업 등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대책은 없고, 도시지역과 도로의 비점오염이 통제되지 않으며,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통한 자연정화 따위는 뒷전이다. 유역의 토지와 자원 그리고 물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자원관리(IRM,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

15) 환경부, 2003, 「2003 환경통계연감」, 수도법은 간이상수도, 수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우물 등을 상수도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수치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비율과는 다르다.

16) 환경부, 2003, 「2003 환경통계연감」

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몇 개의 대형댐으로 단순화되고 광역화되는 상수망은 철저하게 반자연적인 것이어서, 막대한 부하를 자연에 지울 뿐만 아니라 상수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예산 쓰는 재미에 과도하게 지어놓은 상수시설이나 하수 시설들의 가동율은 30-40%를 넘는게 없어,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하천수를 음용할 수 있는 환경의 한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들은 1% 이하로 추락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당분간 변할 것 같지 않다. 이에 비해 정수기 시장의 규모는 2004년에는 1조에 달하고, 먹는 샘물 시장은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저심층수니 이온수니 하는 기능성 물의 시장규모도 급속히 넓어져가고 있다. 거대한 상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 속속 건설되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수질 정책이 소비자의 수요와 요구를 외면하고, 물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채, 철저하고 공급자들의 입맛과 철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목적한 급수율, 처리율 등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믿음을 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다.

3) 한국 물정책의 대안

Gavan McCormack에 따르면, 일본의 토건업 종사자는 제조업 종사자 480만명보다 많은 600만명이고, 국가예산의 43%와 GDP의 20%를 생산하는 일본경제의 중심 산업이다[17].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의 토건업은 건설성이 공사를 발주하고, 기업들이 공사비의 일부를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상납하고, 정치인이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는 유착, 가격조작, 뇌물제공의 사슬 구조를 받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구조의 일본을 '토건국가(土建國家)'로 명명하고, 국가의 부를 빨아들여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면서, 재정위기와 환경파괴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설'이라는 행위가 권력의 재생산과 이윤의 분배과정에서 부수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전후 장기간 지속된 일당지배체제하에서 민중에 기생하는 부류들의 '나눠먹기'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토건의 목표와 우선 순위는 공동체와 시장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대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토건업계 자체의 필요에 의해 확장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토건국가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라는 용어와 함께, 지속가능하지도 정당화 될 수도 없는 건설업계-건설성-정치가들의 고리를 조롱하는 단어이다.

17) McCormack, G., 권숙인 외 역, 1996,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

이러한 McCormack의 분석은 한국에서도 놀랄만큼 정확히 일치한다.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4,257,000명의 절반에 근접하는 1,850,000명이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다[18]. 이를 배경으로 예산과 인력의 확장을 꾀하는 개발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건설업체들, 생태맹(生態盲)의 정치인들, 이들의 하위 동맹자이며 대변자인 학자 등이 강고한 커넥션을 형성하여 지금의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한국의 물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제3세계 인구의 5명중 1명이 위생적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 가는 아이들이 8초마다 한 명 꼴이며, 매일 1만 4천명에서 3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지금, 한국의 모습은 이렇다. 소위 개발된 국가들에 속하는 국가 중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비효율적인 물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은 불필요한 공사를 계획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료의 왜곡과 엉터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자본의 이익을 쫓아 공동체의 필요나 세계의 공익과는 무관하게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의 물 정책은 강 생태계의 보전, 이곳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과 공동체의 권리 존중,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의 충족, 훼손된 물 환경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이 변화해야 한다.

첫째, 인공의 시설 대신 물의 순환과 자연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책이다. 홍수나 가뭄의 완벽한 극복이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천이 선택한 물길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국토 이용을 통해 재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의 녹지를 넓히고 도시계획을 개선해 재해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며,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자연습지와 농지를 완충지로 활용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비용보다 수해위험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농지의 한시적인 침수를 보상하는 비용이 더 경제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물 정책을 건설이나 토목에 앞세워 진행하기 보다 자연의 질서를 숙고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무제한 물 공급을 늘리기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물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어떠한 자원도 무한하거나 영원할 수 없으며, 자원의 낭비는 다른 가치와 기회의 상실을 뜻한다. 물이 부족하다고 댐과 상수도 시설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물 절약사회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대신 오염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되살려 자연의 정화능력에 기대는 것도 방안이다. 수리권을

18) 통계청 홈페이지, 2003. 12., 업종별 통계 인구 현황

도입해 상하류의 합리적인 분배를 시도할 수 있으며, 부실한 물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개혁해 비효율적인 물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행정가와 건설기술자들에 의해 독점된 물 정책은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로 대체되어야 한다. 물 정책은 물리적인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수질의 수치만을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물에 대한 사회의 의식과 물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회 집단(수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 하천의 상류와 하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간의 균형,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대간 형평, 자연의 가치와 환경용량을 존중하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 정책은 행정가들과 건설업자 그리고 몇몇 학자들의 테이블에서 내려와, 시민들과 지자체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물정책은 국가단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거주민들의 경험에 바탕하지 않는 물정책은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터에 대해 주인의식이 전혀 없으며, 자연재해와 관리실패에 따른 피해는 모두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역의 현실과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물 정책은 비효율을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 지역분권의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물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분산적인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행자부, 산자부, 해양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물 정책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과 권리가 모호할뿐만 아니라 중복과잉투자의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다. 홍수예방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농림부는 농지에서, 행자부는 주거지에서 그리고 건교부는 하천 제방을 따라 설치한 곳곳의 양배수장에서 물을 퍼 올린다. 어디에선가 저장되어야 할 물을 서로 떠넘기니 꼴이니, 결국 예산만 들일뿐 수해에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부부처들의 이기주의를 해체하여, 원칙과 방향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할 기구의 구성,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부처의 협력체널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차원의 통합은 뒤로 미루더라도, 현장의 유역관리청, 국토관리청 중 하천국, 홍수통제소 등의 조직은 시급

히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은 개발과 성장의 논리인 시설과 기술이 아닌 생태적인 철학에서 찾아져야 하며, 시설과 물량중심의 물 정책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더 확인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후진적인 물정책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의지로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첨부14>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제안(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준비 자료)

<물 정책 개혁 7대 과제>

. 물 관리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정비
.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
.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물 정책 전환
.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 정책 수립
.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친환경적 관리
.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대책 수립
.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1) 물 관리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정비

. 현황

현행의 물 관리 체계는 7개 이상의 부처가 최소 24개 이상의 법률들을 적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물 관리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 물 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불분명하며, 일관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하천법'이 기본법을 대신하고 있는데, 하천법에 근거해 세워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각 부처의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이고, 더구나 개발부서인 건교부의 시각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있다.

. 문제점

국가의 정책이념이나 원칙에 대한 규정 미비는 개별 법률들 간의 모순을 일으키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게 한다. 동일한 하천에 민법이 인정하는 공유하천용수권(관행수리권)과 하천법 등에 의한 허가수리권이 동시에 적용되고, 하천점용료는 유상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용수는 무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모순된 법률체계는 수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방해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 순환체계의 보전이나 친환경적 이용과 같은 통합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없어, 물 관리를 위한 총체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수리권 개념이나 물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없게 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하나의 유역으로 연결된 북한강과 임진강에 대해 대책수립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 개선방안

물 이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새로운 기본법에는 하천수와 지하수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물이 공공재임을 천명하고, 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 유역관리, 통합관리, 참여적 접근,

공공적 성격 등을 기본원리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법의 왜곡된 물이용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물의 배분을 위해 수리권을 재정비하고,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시킴으로써 수익자들의 비용부담과 물 절약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물이용에 대한 허가의 범위를 넓히고,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통합하여, 물 순환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물 이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기본법에 의거하여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특정부처의 이익으로부터 독립되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며,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물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

. 현황

한국의 물 관리는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수질개선기획단), 수량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수질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농업용수를 총괄하는 농림부 그리고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기상청 등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각 부처는 일선집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환경관리청을 두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물 관리 기능에 대응하여,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 집행업무를 분산시키고 있다.

. 문제점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위해 설치된 수질개선기획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의 수자원 계획이 여러 부서의 기능별 계획(상수도계획, 하수도계획, 농업용수개발계획, 방재계획 등)과 연계되지 않아 중복투자가 만연하고 정책들 사이의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1) 조정기능의 미약, 2) 수량과 수질 연계관리 곤란, 3) 물 수요와 공급의 이원화, 4) 홍수관리업무의 이원화, 5)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관리업무의 다원화, 6) 행정구역 단위의 하천관리체계, 7) 유역과 행정구역의 혼합적 수질관리, 8)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련 법령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은 업무 수행이 부처단위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한 한국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물 정책이 기능별로 분산되어, 비협조적이고 분절적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 개선방안

우리의 물 정책이 통합성과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 물의 수요와 공급, 유역의 비전과 주민의 이해까지 반영하여 지역을

디자인하는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환경을 보전하고 물의 순환을 유지시켜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가능케하는 종합적 설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물 관련 기능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 관리를 위한 독립된 부서를 신설하거나 하나의 부서로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3)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물 정책 전환

. 현황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추구 과정에서 한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대량의 공급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50여 년간 건설된 댐의 개수는 19,000개,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만도 1,214개에 달했다. 수도의 경우 3,236만톤/일의 시설용량으로 1,825만톤/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관거 연장만도 120,405km를 건설하였다. 하수 처리를 위해서도 112,567km의 하수관거와 1,929만톤/일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갖추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상수도 사업 관련 세입세출은 연간 4조 7천억원, 하수도 사업관련 예산은 3조 1천억원 수준이며, 댐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도 2조원 전후의 예산이 이용되고 있다(이상 자료는 모두 2001년 기준임).

. 문제점

이상의 정책결과 한국은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돗물의 직접음용 비율은 1% 내외에 머물고, 상하수도 시설 가동률은 50-6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댐과 제방의 건축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수리시설들은 산간과 도서지역의 가뭄피해를 줄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환경부하와 생태계의 교란 그리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공급위주의 정책은 심각하게 비난받게 되었다. 더구나 국민들의 환경의식 발전과 개발부지의 여건 악화는 기존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저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개선방안

이제 물 정책은 수요관리를 통해 물이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활동이 자연환경의 수용능력 내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소비를 절제시키고, 자연 훼손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물 공급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은 상하수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대신 오염발생 자체를 억제하며, 수리권제도를 재정립하여 상하

류의 합리적인 분배를 시도하고, 부실한 물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개혁해 물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받아 왔던 산간이나 도서지방의 주민들을 위해, 소규모의 섬세한 지원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물문제의 원인은 예산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예산이 불러온 과잉개발 때문이다.

4)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 정책 수립

. 현황

우리나라 물 관리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하위 집행자인 지자체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대행할 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하천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지역 전문가의 양성도 미미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단위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물줄기와 물그릇에 대한 고려가 없이 행정의 경계를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된다. 따라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4대강 특별대책이 수립되었지만, 타 지역에 대해 관심 갖기를 꺼려하는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전되고 있다.

. 문제점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획일적인 지침은 지역의 복잡한 현상과 사회관계에 대응하지 못하는 극심한 비효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을 물관리에서 소외시켜 주인의식을 상실케 함으로서 많은 가능성을 박탈하고 말았다. 즉 주민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없으며, 비상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도 원치 않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정책과 시설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또한 행정구역단위의 물 관리체계는 조직과 재정 등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물 관리 담당 공기업 등 관련기관의 이해관계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주민과 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수질의 개선과 물 순화시스템의 복원을 위해서는 오염총량제의 조기 정착과 유역관리체제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유역차원의 물 관리 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 개선방안

물 정책은 국가단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유역단위 관리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탁상공론이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관련부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유역관리청 그리고 지역주민 등을 포괄하는 유역차원의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일관된 집행체계의 구축도 시급하다.

5)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친환경적 관리

. 현황

우리의 물 정책은 철저히 경제성장을 위해 기획되고 실천되었다. 공장의 가동과 도시의 유지를 위해 19,000여개의 댐이 지어져 대량으로 물을 공급한 결과 하천유출량의 45.3%(731억톤 중 331억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홍수 방지를 위해 38,450Km의 제방을 건축하고, 물길을 왜곡하거나 복개하기도 했다. 70-80년대엔 토지이용 효율화를 빌미로 하천변의 습지 간척이 적극 추진되었고, 특히 강의 경사가 완만해 주변에 넓은 습지를 가졌던 낙동강은 일제시대 이후 90% 이상의 습지가 개간되어 농지나 택지로 변했다.

. 문제점

이러한 하천개발정책 결과 두 가지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우선 생태계는 댐과 제방의 건축 그리고 습지의 파괴에 의해 교란되고 위축되었다. 댐은 강의 생태계를 상하 좌우로 토막 내고, 물의 흐름을 지체시키거나 기후를 변화시켰다. 제방은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의 연결을 방해했으며, 습지의 전용은 하천생태계를 축소시키고 빈곤하게 만들었다. 둔치의 농지이용이나 하천복개와 불투수층의 증가도 생태계의 유지를 어렵게 했다.

다음으로 환경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천의 왜곡은 국토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홍수피해액이 1970년대 연평균 1,323억원, 1980년대 3,554억원, 1990년대 6,288억원으로 끊임없이 늘어났고(1995년 기준),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조원의 피해가 늘어난 것은 구조물 중심 치수정책의 한계를 확인한 것이다. 하천의 직강화, 습지의 전용, 하천구조물의 과도한 건설 등 물 순환을 교란한 치수 정책은 이제 타당성을 완전히 잃었다.

. 개선방안

인간이 개발한 하천 관리의 기술과 구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의 순환과 자연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홍수나 가뭄의 완벽한 극복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 우리는 하천이 찾은 물길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국토 이용을 통해 재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계획을 개선해 재해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며, 인간과 자연 사이에 습지와 농지를 완충지로 활용하는 등 자연과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소하천 정비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지역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친환경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6)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대책 수립

. 현황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3억톤으로 추산되며, 현재는 24.2% 수준인 약 32억톤이 이용되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신고 또는 등록된 지하수공은 약 111만개이며, 개발 목적의 60% 이상은 생활용수이고 이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농업부문과 생활부문이 가장 많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지하수의 오염관측망은 2,134개이며, 최근 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 정도의 지역이 지하수 수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는 건교부와 환경부등 5개 부처가 10여 개의 관련 법률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건교부 93억, 환경부 1억 수준이다.

. 문제점

지하수 역시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관리체계가 모호해 난개발과 관리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하수를 총괄하는 건교부, 지하수 수질관리와 먹는 샘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농림부, 온천 개발을 관리하는 행자부 등 나뉘어져 있어, 일관된 행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 관리가 가능한 시설은 19.6%에 불과하고 비관리 대상이 80.4%에 달한다. 건교부가 확인해 조치한 5만 여개의 외에 실제로는 20만개 이상의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공도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하수의 특성상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동안 지하수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정화 그리고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공재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지하수개발과 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지하수 이용에 대한 세금부담의 기준 등이 부정확해(현재는 먹는 샘물에만 수질보전부담금을 물리고 있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개선방향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또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개발과 보존 그리고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하수법을 정비하고,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념을 도입하여 사적인 남용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관측망 증설, 지표수 계획과 연계한 지하수관리기

본계획의 수립, 지하수보전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7)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 현황

'물' 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낙동강 중하류의 대립, 동강과 한탄강의 댐 건설 논란, 새만금 간척사업 타당성 논쟁 등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의 부분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 물정책의 효율성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1989년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무려 20조원의 수질개선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강의 수질과 수돗물의 품질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홍수에 대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2002년과 2003년에 거대한 태풍 피해를 입었고, 2년 동안 복구를 위해서만 16조원의 비상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 문제점

이렇게 갈등과 비효율이 초래된 것은 그 동안의 물 정책이 이해 관계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관료들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 밀실행정을 관행화 해온 탓이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성장한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은 부당한 절차와 피해를 용납하지 않게 됐으며, 환경가치에 대한 사회의식의 제고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무엇보다 관료들의 탁상행정이 지역의 다양한 현실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와 비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게 됐다. 더구나 물 관리 행정조직은 경직된 하향식의 명령체계였기 때문에 분출하기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와 확산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지 못했다. 이미 중앙정부 주도의 물 정책은 권위를 잃었고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거의 체계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물정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 버렸다.

. 개선방안

이제 하향식의 물 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지혜를 담는 민주화와 대중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물이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급담당자인 행정가와 건설기술자들이 추구하는 수치상의 정책목표가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상수도 보급률 87.7%보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이 의미 있으며, 수조원의 수해복구 예산보다 자신들의 삶터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참여와 제안이 더 타당하다. 사업 초기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는 상향식·참여형 물정책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첨부15> 한탄강댐 관련 진행일지(행정지원팀 정리자료)

<첨부16> [한탄강 댐 해법 찾기]에 대한 소고(小考)(김경위원 발표자료)

. 지난 수 주(週) 동안 [갈등해결 준비단회의]에 참석하여 배우고, 이해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여러 가지 Fundamental Questions를 제기해 봄으로써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함. 아울러 앞으로의 협상, 중재, 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추론해 보고자 함.

1) [지속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한탄강 댐 갈등해결 프로세스의 진행" 을 왜 하필 지속위에 맡겼을까?

. 국정철학(참여정부의 국민통합 정치)의 중-장기적 계획의 일부인가?

. 아니면 단순한 요식행위 속의 들러리인가?

. 협상, 중재, 조정과정에서 [지속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 아니면 단순히 협상, 중재, 조정 공학적이고 기계론적인 자세만을 취할 것인가?

.. 만약 그렇다면, 한탄강 댐 해법을 [지속위원회] 대신 제3의 '가치중립적' 인 갈등해결센터나, 협상/중재/조정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지속위원회]는 과연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 일 수 있는가?

.. 독립성(선입견, 편견, 가치관 및 어떤 외부압력으로의 독립)

. [지속위원회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가치선택이 가능한가?

.. 만약 협상, 중재, 조정 Process를 진행 시켜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지속위원회]가 끝까지 "중립" 만을 지키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또한 어떤 시점에서 할 것인가?

. "한탄강 댐 갈등상황" 이 갖는 총체적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갈등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Sample?

..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의 살아있는 예

.. 어떤 주체가 공적영역에서 작업을 추진 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의 재정리

. "한탄강 댐 해법" 이 갖는 상징성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 우리의 갈등해결이론은 제대로 정립되어있다고 보는가?

... (Text와 Context, 변증법적 재정립?)

.. 이론에서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준비는 되어 있는가?

... (총론과 각론, 이론과 현실분석 그리고, 실천 사이)

. 앞으로 [지속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협상의 길을 허용 할 것인가?

.. 현재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의 직접적인 물밑협상은 완전중단 상태인가?
..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 현재, 혹은 앞으로 이상의 경우가 발생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 [조정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약속 할 것이며, 또 할 수 있는가?
.. 또한 협상, 중재, 조정 초기에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인가?

2) 협상, 중재, 조정의 실제 진행과정에 임하는 [지속위원회]의 자세

. [조정위원회]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가치에 기초하여, 그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는 부담이며, 다른 하나는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을 해소하여 갈등예방과 해결의 새로운 Model과 Sample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 [지속위원회]와 위원들은 협상, 중재, 조정을 진행시켜 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있지는 않으나, 진행과정에서 일어 날 수도 있는 돌발 사태나, 특히 진행자나 위원의 실수로 인하여 야기 될 수도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또한 안고 있다.
. [지속위원회]는 협상, 중재,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적 강제성이 없으며 이것은 기능적인 한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한계가 협상, 중제, 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 협상, 중재, 조정을 시작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時機)는 언제인가?
.. 갈등국면이 오래 지속되어, 양측 모두 누군가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 여부진단
.. 아직은 어떤 외부의 개입도 원치 않는다는 태도 여부판단
. 현재 [지속위원회]의 목표는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생각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역할은 어떤 것인가?
. 가장 이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은 가능 할까?
. 이해당사자의 분류와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같아야 하나, 달라야 하나?
.. 댐 건설 구릅 -건교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시공 건설회사
.. 댐 건설 찬성 그룹 -순수하게 삶을 걱정하는 주민들
-투기목적의 외지인들
.. 댐 건설 반대 그룹 -환경문제 등 어떤 신념과 순수성이 있는 사람들

-반대를 통해 유리한 협상조건을 조성하려는 사람들

.. 백지상태에서 댐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려는 사람들

... 이상의 어떤 경우에도 명분과 실리추구의 복합성은 거의 예외 없이 내재되어 있음.

... 경우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태 역시 존재함.

. 의제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우선은 큰 주제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세부적인 사항은 큰 주제가 타결 된 후, 점차적으로 접근한다.

. '갈등' 이라고 하는 현상의 신비성은 어떤 것인가?

.. '갈등' 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사회구성원들에게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보다 바람직 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 [지속위원회]위원과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 협상, 중재,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위원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손실은 어떤 것일까?

.. 사회갈등과 불신과 혼란이 협상 전보다 오히려 가중 될 가능성이 크다.

.. [위원회]의 정체성과 위상정립에 치명적이다.

. 이해 당사자들의 명예로운 퇴진은 어떻게 가능 한가?

.. 한쪽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를 얻어 냈을 때, 어떻게 그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 할 것인가? 새로운 제안은 가능한가?

. 절차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 절차민주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측에 어떤 이득이 가능하며, 이를 어기는 측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 이해당사자들 내부에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발생 할 경우, 위원회의 입장은?

. 이해당사자가 약속(중간약속과 최종약속)을 어길 경우, 위원회가 취 할 입장은?

.. 구속력과 강제성의 결여

.. 사회적 여론에 호소?

.. 위약자에 불이익을?

. 봉합과 야합과 완전타결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 사적(私的)영역과 공적(公的)영역의 차이 속에서

. 'Post Han-Tan River Dam'(한탄강 댐 해법 이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 댐이 건설되었을 경우

.. 댐 건설이 백지화 되었을 경우

.. 제3의 대안이 채택 되었을 경우

... 각 이해 당사자들이 취 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모두가 반성의 계기로)

... 지고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자존심 대결이 아님)

. 공동체적 상상력(Post Han-Tan River COMMUNITY IMAGINATION)

.. 우선 오랫동안 누적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 할 방법론

..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구상과 청사진 제시

.. 참여사회의 구현(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시민단체, 시장(市場) 등)

. 협상, 중재, 조정의 도(道)

.. 도(道)의 문제이지 술수(術數)의 문제가 아니다.

... (고로 전략, 전술의 관념은 버려야한다-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군사작전 용어)

.. [지속위원회]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와 방향이 최고의 길이요, 또한 유일한 무기이다.

. '한탄강 댐 해법' 현장에 투입되는 위원들의 정신적 준비는?

.. 해법을 찾는 작업 자체가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데 대한 확고한 신념

.. 한탄강 댐을 둘러싼 모든 영역(삶,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총체적이해력

.. 이슈(issue), 분위기, 시간, 공간에 대한 장악력

<첨부17> 제3차 남북공동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개최결과(건교부 자료)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2004. 4. 8(목)~10(토)/ 개성

. 참석자: 수자원국장(수석대표), 통일, 국정원 담당과장

.. 북측: 단장 김병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외 대표 2명 등

2) 주요 합의내용

. 현지조사와 관련한 단독조사 항목 및 북측에 제공할 조사용 기자재,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

. 조사항목: 산림 실태, 하천 및 기존댐 현황, 기상·수문관측망 형성을 위한 조사 등

. 조사용 기자재제공: 업무용 버스, 유속계 등 43개 품목

. 북측의 자료제공항목: 기상·수문관측소 현황, 강수량 등 기상·수문 관측자료, 댐 등 수리시설물 현황

..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북측은 우리측에서 제시한 관측망 형성 및 통보체계를 문서교환방식으로 빠른 시일내 협의·확정

3) 향후 추진계획

. 북측의 단독조사용 기자재 제공: '04. 5.10일 예정

. 현지조사 추진: '04. 5월~10월

.. 단독조사: '04. 5.20~8.20(당초 4월중 착수계획)

... 북측이 우리측 군사훈련을 이유로 실무협의회가 3월에서 4월로 연기

.. 공동조사: '04. 9~10월

. 수방대책 수립 및 협의 : '04. 11~12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 남과 북은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이 단독조사 항목과 세부조사내용 및 조사용 기자재 제공목록,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고 이를「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의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를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4. 4. 10, 개 성

<첨부18>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운영현황 및 계획(정진승 단장 제안자료)

1) 2004. 2. 12 : 한탄강 댐 갈등관리 준비단 구성을 대통령께 보고
   . 위원: 정 진승(단장), 이 선우(팀장), 박 수선, 이 영희, 이 영면
   . 이 영면위원 사퇴, 허 상수 및 김 경 위원 참여
   . 4월 중순 준비단 해체 및 조정위원회 구성
2) 준비단 회의
   . 제1차 회의(’04. 2. 17. 12:00-14:30): 준비단의 향후 활동방향 논의 및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사례 청취
   . 제2차 회의(’04. 2. 26. 16:00- 20:30): 준비단 작업 계획 협의 및 댐 건설 반대측 의견 청취
   . 제3차 회의(’04. 3.11. 16:00-19:20):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위원의견 청취
   . 제4차 회의(’04.3.16. 16:00-19:30): 준비단 작업추진 상황 점검 및 댐 건설에 대한 건교부 및 수공 의견 청취
   . 제5차 회의(’04. 3. 20. 9:00-19:00): 한탄강 현지 답사
   . 제6차 회의(’04. 3.23. 14:00-20:00): 찬성, 반대측의 주요 쟁점사항 검토 및 위원별 검토과제에 대한 토론
   . 제7차 회의(’04. 3. 30. 14:00-18:30): 시민단체 의견 수렴 및 위원별 검토과제 토론
   . 제8차 회의(’04. 4. 6. 14:00- 19:30): 댐 건설 찬성 및 반대지역 주민 의견 청취
   . 갈등조정 전문위에 준비단 추진경과 보고(’04. 4. 8-4.9)
   . 제9차 회의(’04. 4. 6. 14:00- 18:30): 준비단 활동 정리, 조정절차 등 논의
3) 준비단 운영 결과
   . 지속위위 조정 역할에 관하여:
   .. 지속위의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역할에 관하여 인정
   .. 지속위의 중립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른 조정 신뢰
   .. 일부 지속위가 결정기관이라는 인식의 해소 노력 필요
   . 이해당사자의 선정
   .. 댐건설 찬성 지역주민: 대부분 하류지역 주민으로 구성
   .. 댐건설 반대 지역주민: 대부분 상류지역주민과 일부 하류지역 주민으로 구성
   .. 환경관련 시민단체: 댐건설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입장을 대변
   .. 정부 및 수자원공사: 댐건설을 찬성하는 전국적인 입장을 대변
   *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이해당사자 대표가 선출되고, 조정위원회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

* 이해 Group별 조정위원회에 참여 인원은 2-3명을 제한.

[별첨] 이해당사자간의 이견 현황

. 이해당사자의 협상 참여 유도 방안

.. (2-1)지속위의 중립적이며 투명한 조정 Process에 관한 언론 홍보 추진

.. (2-2)지속위의 조정 Process에 관한 Leaflet의 제작 및 배포

.. (2-3)이해당사자(지역 주민 포함)를 대상으로 조정의 의미와 과정, 참여방법 등에 관한 간담회 추진(조정에 참여하여 얻는 장점과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설득)

.. (2-4)이해당사자별 쟁점 정리 및 공동체 협동과 신뢰 구축을 위한 Workshop 지원

.. (2-5)조정위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Workshop 추진

. Ground Rule의 작성(초안 작성 완료)

[별첨] 초안

. 홍수방지를 위한 가능한 대안의 기초 검토

4) 검토 사항.

. 조정위원회의 역할

..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자의 역할에 국한

..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의 수행

. 조정의 범위

.. 한탄강 댐 건설 여부에 관한 조정에 국한

.. 지역 홍수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정

. 행정 및 예산 지원

.. 준비단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처우

.. 홍보 및 Workshop을 위한 예산

.. 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남북한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방안 등 홍수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검토하기 위한 Sub-Committee 활동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

. 조정위원회 구성

5) 향후 추진 계획

. 논의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검토: 4/20/04

. 이해당사자 참여 유도

.. (2-1)(2-2): 담당

... 주요 내용 작성: 4/27

... 추진: 5/4

.. (2-3)(2-4): 담당

... 시행일자: 4/28, 4/30

... 통보: 4/22

. 이해당사자의 선정: 담당

.. 통보: 5/1

.. 선정 회신 마감일: 5/11

.. 1차 조정위원회: 5/18

.. 조정위원회 Workshop: 5/21-5/22

. Ground Rule

.. 초안 작성: 5/21-5/22

.. 최종안 작성: 6/1

. 조정위원회 활동: 6/1 - 8/31

<첨부19> 한탄강댐 갈등분쟁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수정본(박수선위원 발표자료)

한탄강댐 갈등분쟁이 댐 건설과 댐 건설 반대의 갈등분쟁으로 나타났지만, 그 근본 원인은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인 갈등분쟁해결의 논제이자 공통의 해결과제로 접근할 수 있는 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임진강유역의 홍수피해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과 결과는 한탄강댐 갈등의 근본원인의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위의 한탄강댐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및 방안에 대해 현실의 변화에 맞게 다양하게 꾸려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준비하고, 역동적으로 과정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세 가지 안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지속위가 진행할 수 있는 갈등분쟁해결 과정을 그려본 것이다.

1안) 현재 준비단에서 진행, 준비하고 있는 조정프로세스

. 목표: 당사자 중심의 갈등해결(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폭력적, 파괴적 사회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모범을 만든다.

. 조정 프로세스는?

갈등 당사자들이 자율적 의지로 참여해서 대화, 중립적 사실조사 등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여러 방식을 통해 갈등분쟁을 논의, 해결해가는 것으로 조정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간 의사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며, 당사자들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체이다.

. 진행과정

.. 주민설명회: 조정 프로세스란? 조정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조정의 과정 등

.. 각 당사자별 쟁점 정리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워크샵 지원 및 참여

.. 당사자간 신뢰형성 워크샵 개최

... 내용: 조정 프로세스 진행 관련한 세부사항 합의(Ground Rule 정하기, 신뢰구축 등)

.. 조정 프로세스 시작

... 이야기하기→쟁점규명→해결책찾기→합의

. 전제조건

.. 한탄강댐 건설 관련해서는 조정 프로세스 진행 및 참여자에게 모든 결정의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 정치적 의도, 상황적 변수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 예산 확보/해결책 찾기과정에서 대안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조정위원회의 에 대한 보장

2안) 임진강 수해대책 관련한 남북교류가 현실화될 경우의 프로세스/자문

. 갈등해결의 목표 및 방식

.. 한탄강댐 건설의 주요 목적인 홍수조절이 임진강 본류에 댐 건설 가능성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댐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갈등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므로 조정프로세스를 통한 갈등해결이 아니라 정부(건교부, 수공)의 사업계획 변경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 지속위의 자문내용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 그러나 4년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일정부분 파괴되고, 주민간 갈등과 관계단절이 있으므로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과 정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가 남는다.

.. 지속위는 이 문제에 개입하는 목적을 '지역주민간 대립, 갈등 해소와 정부정책결정과정의 불신 해소' 에 두고 그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Facilitation)

. 진행과정 및 방법

.. 주민설명회/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의 활동 경과 및 결과

.. 한탄강댐 갈등분쟁 관련자들의 대화모임/워크샵

... 한탄강댐 갈등분쟁과정의 문제 공유(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불신, 지역주민간 불신과 대립 등)

...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의미 및 확대 방안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 언론홍보/ '평화적 갈등해결의 제도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제기 및 한탄강댐 갈등해결과정 홍보

... 이 프로세스는 중재(Arbitration)+진행(Facilitation) 과정임.

... 중재(Arbitration): 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돕는 과정으로 조정(Mediation)이 문제해결의 제안이나 결정권이 당사자들에게 있다면 중재(Arbitration)과정에서는 중재자가 갈등 당사자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역시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된 인정과 요청에 의해 과정이 시작된다.

3안) 임진강 수해대책과 관련한 남북교류의 희망적 전망을 기대하며 현실적 문제 중심의 조정-중재 프로세스(Medi-arbitration)

. 목표: 댐 건설의 근본취지인 임진강 수해대책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모델을 만든다.

.. 근원적으로 임진강 유역의 댐건설을 기대하지만 남북한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댐 건설 계획은 보류한다.(중재의 형태로 지속위에서 보류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을 설득함)

.. 현실적으로 문산 파주지역의 홍수피해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해대책과 관련한 여러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방안을 모색한다.(조정)

. 과정

.. 각 당사자별 설명회/댐 건설 보류의 필요성에 대해 각 당사자 이해시킴. 경과 및 앞으로 조정 프로세스에서 진행해야 할 내용 소개, 대표자 선정 방법 등

.. 신뢰형성 및 진행절차 합의형성 워크샵

.. 중·조정 프로세스

.. 합의

. 지속위의 중·조정 Medi-arbitration 역할

.. 정부(건교부, 수공)와 각 당사자들에게 댐 건설 보류를 제안, 설득한다.

..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한 수해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진행, 운영한다.

<첨부20> 한탄강댐 관련 쟁점과 관련당사자의 입장(행정지원팀 정리자료)

<첨부21> 준비단 제11차 회의시 논의 필요사항(행정지원팀 정리자료)

1) 지속위 입장 설명회일정 재논의 및 설명회개최 통보방식 논의

. 준비단 제10차 회의시 정부와 환경단체 설명회(4.29,목)와 주민설명회(5.1, 토)를 각기 개최하는 일정을 잡았으나,

. 철원주민 설명회를 따로 열자는 주장(철원 장진혁 위원장)에 이어 4.26(월)에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제기(연천포럼 최의순 실장)

. 지금까지의 의견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주민설명회	통합설명회
참석범위		현지 주민	현지 주민 포함, 건교부 등 관련당사자로 확대
일시, 장소		5월1일(토), 19:00, 포천 관인면민회관	5월1일(토), 19:00, 포천 관인면민회관
찬성측	수몰민대책위 이수인 위원장(포천)	동의	동의
	수몰민종합대책위 김준문 위원장	동의하나 반대측의 행동우려	동의
	수몰민종합대책위 홍순각 부위원장	동의	사전결정이 없었다는 지속위의 입장표명을 전제로 동의
	제1대책위원회 최해선 부위원장	동의	동의
반대측	포천대책위 이병욱 위원장	동의, 지속위 결정에 따름	동의
	연천대책위 홍원기 위원장	찬반별도 개최, 찬성측의 행동우려	동의
	철원대책위 장진혁 위원장	철원에서 별도 개최 or 찬반별도 개최, 찬성측의 행동우려	동의
	연천포럼 최의순 기획실장	개최에 동의하다가 통합개최를 요청(주민을 찬반 개념으로 구분하지 말 것)	동의

. 중앙환경단체에 대한 설명회 참석요청 문서를 어디에 보낼 것인지 논의 필요

2) 보도자료와 설명자료의 내용 및 배포방법·담당위원 선정

. 이영희, 박수선 위원 수정안 논의·확정

..설명회에서 사용할 power point 자료는 박수선 위원이 작성한 설명회 기획안을 기초로 작성

.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방법

.. 연천군에는 기자실이 있으나, 포천과 철원군에는 기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e-mail로 보도자료를 송부한다고 함

.. 연천군 기자실에 프로세스 설명위원 및 기자들의 유선질문에 대한 응답을 전담할 위원 결정 필요

.. 주민설명자료 배포를 지자체에 의뢰할 것인가 대책위관계자 등에게 의뢰할 것인지 여부, 준비단 위원의 역할 등 논의(4. 28일에 의뢰 추진)

. 설명회에 참석할 위원 및 사회자, 발표자, 질의에 대한 응답자 등의 역할 결정

3) 관련당사자 대표자 조정회의에 참여할 위원 선정

. 조정위원회에 (가칭)현장팀 2~3명을 두어 당사자 대표회의에 직접 참여함

.. 필요조건

... 1주일에 2~3일 가량 현지활동을 할 시간이 가능할 것

... 현지활동과 지속위 상주를 병행할 수 있을 것 등

. 현장팀 참여위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인사 영입 여부 및 대상자 논의

4) 관련당사자 대표들과 조정위원이 함께 하는 회의체의 명칭 결정

. '한탄강댐문제해결대표자(조정)회의', '한탄강댐해법찾기위원회' 등

5) 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사항 기록전담자로 엄두용 박사 지정문제 논의

6) 대표자회의 simulation 실시방안

7) 향후 조정절차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논의

. 주민설명회 및 언론홍보 관련(5. 1)

.. 설명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설명회가 찬성 또는 반대의 성토장으로 변질될 경우 현장대처방안은?

.. 지속위의 중립성 또는 권한에 의문 제기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 설명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질의(예: 질의한다고 해놓고 찬성 또는 반대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사회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명자가 전담할 것인가?

.. 관련당사자 그룹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예: 환경단체의 이해관련성에 대해 문제 제기, 파주와 문산지역 주민이 관련당사자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등)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 지역언론이 사실을 왜곡할 경우 대응은? 등등.....

. 관련당사자 대표 선정, 워크샵 개최 및 Ground Rule 설정 관련(5월)

..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을 문서로 담보 받는 방안은?

.. 상대편 대표자의 대표성을 문제 삼을 경우, 조정방안은?
.. 지속위 예산으로 개최되는 워크샵 참여에 대한 부담감으로 워크샵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워크샵을 생략하고 대표자회의로 들어갈 것인지?
.. Ground Rule 협의과정에서의 이견조정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관련당사자 대표회의 관련(6~8월)
.. 중간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할 경우, 조정을 재시도할 것인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 대표자간 최종합의가 된 후에 일부 주민들이 원점에서 반발할 경우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첨부22> 준비단 제12차 회의시 논의 필요사항(행정지원팀 정리자료)

1)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활동 평가

. '04. 2. 17 준비단 발족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요쟁점 파악, 관련당사자 그룹 분류, 조정프로세스와 일정계획 수립 등의 성과 달성

. '한탄강댐 갈등조정위원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갈등조정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마무리작업 필요

2) 남은 과제

.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에 직접 참여할 조정위원 선정

. 한탄강댐조정회의 워크샵(5.14~15 예정)에서 논의할 Ground Rule(안) 작성위원 선정

. 주민대표자 선정방식과 절차문제 결정

.. 설명회 참석요청문서는 각종 대책위에 보냈으나, 설명회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대표자 선정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의회와 대책위에 동시 송부, 협의하여 선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건교부에서 그동안 의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연천군의회에서 불만 표출이 있었음(주민설명회날 연천군의회 방문시))

.. 형식에 있어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동의서명을 첨부하도록 주문할지 여부 판단

.. 대표자 선정과 한탄강댐 조정회의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연천의 수공사무실 철수 주장이 있었는 바, 향후 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해 가도록 최의순 실장을 접촉·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의순 실장 접촉 위원 선정

. 파주·문산지역 주민들이 관련당사자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 파주·문산시 치수대책의 내용과 실적, 한탄강댐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주민단체의 존재 여부 등을 행정팀에서 지자체에 의뢰·확인 필요

3)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평가

. 찬성주민 설명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된 반면, 반대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과격한 반응들이 일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정프로세스를 이해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찬반 주민을 분리해서 개최한 것은 옳았으며, 설명회에서 나온 모든 발언들은 모두 녹취하였음

4) 향후 추진일정 관련

. 한탄강댐조정회의 워크샵 일시와 장소는 선정될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준비단에서 예정하고 있는 5.14~15일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 있음)

. 워크샵 논의 이슈는 워크샵에 참여하게 될 조정위원이 작성 필요

<첨부23> 준비단 해단 이전에 해야 할 일 (허상수위원 제안)

. 외국의 분쟁해결 관련 참고

.. 행정분쟁해결법(미국),

...1 條 정의, 2조 일반적 권한, 3조 중립인, 4조 비밀유지, 5조 중재의 수권, 6조 중재인, 7조 중재절차, 8조 중재판정, 9조 사법심사, 10조 지원서비스

.. 平成 15년 중재법(일본) 등

...1장 총칙, 2장 중재합의, 3장 중재인, 4장 중재정의 특별한 권한, 5장 중재절차의 개시 및 중재 절차에서의 심리, 6장 중재 판단 및 중재절차의 종료, 7장 중재판단의 취소, 8장 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결정, 9장 잡칙, 10장 벌칙, 부칙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조정" 절차 및 세부과정의 문서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정위원단"의 구성: 6인 위원 +

.. 조정위원 중 협상팀(전진배치)의 구성: 2-3인

.. "조정"의 정의

.. "한탄강댐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회의"의 규정

.. "한탄강댐문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라는 첫 번째 "분쟁 해결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배포방법, 대상, 시기 등

.. "주민설명회"의 개최 절차, 의미, 얻어낼 것,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방법 등

.. 조정위원의 정의, 자격, 해야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준수규정 등

.. "비밀유지" 규정

.. "조정의 수권: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조정은 언제든지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해하기에 충분한 記述

.. 예상되는 "분쟁의 쟁점" 목록화, 대처방법

.. "조정"이 아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

.. 최종적 "해결"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예를 들면 "조정합의의 시행"

,,, 기타 임의사항

.. 쟁점의 전환

"한탄강댐 건설 추진과 반대 갈등"에서 "한탄강 유역 홍수피해 관리대책"으로 논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홍수조절용 댐 건설

... 제방 증축

... 방수로/분수로 건설
... 경제성 등 타당성 재조사
... 절차의 정당성 확보(원리와 원칙에 따른 백지상태의 접근 등)
... 수해 예상지역 거주민의 이주
... 임진강 본류에 댐 건설
... 저류지/저수지, 강/하천 유역 준설
.. 쟁점 비교표 작성

. 조정이 성사되었을 때
.. 한탄강댐 건설 추진시 예상할 수 있는 쟁점 비교
.. 댐 건설 백지화 결정시 제기가능한 쟁점 비교
.. 댐건설 규모 축소 건설 추진시 예상할 수 있는 쟁점 비교
.. 댐 건설 백지화 이후 다른 대책 발표와 추진시 예상할 수 있는 쟁점 비교

. 조정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때
.. 현재와 같이 교착상태인 채로 시간만 지체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쟁점 비교
.. 어느 일방이 건설과 백지화를 강행하고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태

. 관련 자료
.. 지역 주민들의 각종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 지역 주민들의 활동에 관한 신문 등 언론보도 내용(스크랩과 비디오 테이프 등)
.. 관련 지역 출신 주요 인사(정치인, 기관장 등)의 출신지나 경력, 본건과 관련된 입장 등 관련 사항

. 논의진행을 위한 행정지원(무순)
.. 수몰지역 대책위 위원, 주민 거주현황(3-5년간 주민등록 변동사항)
.. 연천소재 댐 추진 기관의 사무실 운영실태
.. 임진강 상류지역 댐 건설 현황
.. 임진강 상류지역 수문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
.. 행사 당일 기타 준비사항(별지)

<첨부24>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추진현황(건교부 제출자료)

항 목	추 진 현 황	사업기간(년)		비고
		완료사업	진행사업	
임진강유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수해상습지 9개지구 220㎞ 정비완료	'00	-	〃
임진강유역 하상준설 및 하도 정비	·27개지구에 대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완료	'00~'01	-	〃
임진강유역 경의선철도 및 통일로 숭상	·통일로 숭상완료(1.3㎞) ·경의선 노반 숭상 완료(3.12㎞)	'01	-	〃
임진강유역 종합치수대책 수립추진	·임진강수해원인 및 항구대책 용역 완료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02	-	〃
임진강유역 수계 치수대책 수립	·하천 156㎞ 정비완료	-	'03~'07	장기
강화도에 강우레이더 설치	·강화도에 강우레이더 설치	-	'03~'08	〃
임진강 다목적댐(한탄강댐) 공사추진	·한탄강댐 기본설계 완료 ·기본계획 고시 지연 ·한탄강댐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추진 ·턴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1~'09	〃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	-	'03~	〃

<첨부25> 수몰민 종합대책위원회 건의서(연천군에서 접수후 지속위로 송부)

<첨부26> 준비단 제13차 회의시 논의 필요사항(행정지원팀 정리자료)

1) 한탄강댐 향후 추진계획 초안(정진승 단장님 작성)

. 대표자 선정

.. 선정이 지연될 경우의 대처 방안

.. 선정된 대표자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홍수피해지역 주민의 대표자가 참여치 않을 경우의 문제

.. 대표자 선정을 Newsletter로 공지하는 방안의 검토(공지 지역, 대상, 방법 등)

. 회의록 작성 및 녹음

.. 녹음 필요성 여부

.. 회의록 작성 필요성의 여부

.. 작성자: 엄두용 박사 작성 후 이선우 위원 최종 정리

.. 활용 방안: 조정회의 진행과 Newsletter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공개의 범위: 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 검토

. 대표자 Workshop 개최(허상수 위원)

.. 목적

.. 일시 및 장소

.. 참석 대상자

.. Schedule

.. 논의 과제(정기적인 조정회의 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Ground Rule 등)

.. 대표자 전원, 또는 일부가 참여치 않을 경우

. Ground Rule(이선우 위원)

.. Draft의 작성, 대표자들과의 합의 일정 등

※ 별도주제로 논의

. Newsletter 작성

.. 작성 목적: 회의 진행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전달

.. 필요성 및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 검토

.. 작성 방법: 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단히 적고, 합의사항에 한하여 전달

.. 작성자: 회의록에 따라 (***) 위원 작성 후 (***)과 협의

.. 배포 방법, 배포 지역, 대상은?

. 조정회의 진행(1)

.. 대표자 개개인이 댐 건설에 대한 의견과 배경을 큰 주제별로 개진:

이미 위원회에서 작성한 당사자간 이견과 배경을 확인 및 보완. 단 의견만 개진하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은 하지 않도록 유도

.. 주제별 협의: 협의 과정에서 큰 주제에서 자신의 이익과 다른 대표자의 입장을 고려한 차선, 차차선…의 대안을 제시토록 유도. 단 토론은 하지 않도록 유도.

. 조정회의 진행(2)

.. 대표자별로 모든 대표자가 제안한 차선, 차차선의 대안을 검토하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작성토록 유도 또는 지원

.. 이에 따른 대표자별로 합의 가능한 큰 주제별 대안들을 제안할 것을 유도하는 조정회의를 진행

.. 당사자가 합의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못할 경우 지원

.. 대표자들이 합의 가능한 대안들을 조정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

. 조정회의 진행(3)

.. 조정회의 (1), (2)를 계속 반복

.. 합의된 경우, 합의문 작성

. 주제별 협의 순서

.. 대 주제에서 주제별 소의제로 진행

.. 협의 어려운 주제와 비교적 쉬운 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협의

. 예측 가능한 대안의 작성

.. 대안의 예측

.. 대표자들로 부토 대안을 청취

.. 대안을 검토하는 방안의 강구(예 Sub-committee의 구성)

.. Sub-committee의 운영 방안

.. Sub-committee가 해결을 못한 경우의 해결 방안

.. Sub-committee의 예산, 행정 지원 방안

. 조정 실패의 경우

.. 조정 실패의 요건

.. 조정 실패의 선언 방법

.. PCSD로의 이전 과정

.. PCSD의 협의와 조정위원회의 역할

2) Groundrules(이선우 위원님 작성)

. 조정자의 역할 (허상수 교수님 제시한 7번)

.. 조정자의 역할은 갈등당사자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임

.. 판사나 변호사 등 어떠한 공권력이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갈등당사자들은 조정과정과 기술에 대하여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함

.. 조정자는 어떠한 경우이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수용하고 합의할 것을 갈등당사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음

.. 조정자 수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함께 조정과정에 주로 참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별도로 투입되기도 함. 예를 들어, 합의회의나 공론조사 등의 특정한 방법이 활용될 경우임

. 비공개성 및 비밀보장(비밀유지) (허상수 교수님 제시한 8번)

.. 조정자와 조정자 소속기관은 갈등조정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함

.. 조정과정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는 조정참여당사자들과의 공개내용 및 방식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함

. 조정 과정 중에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동의: 서로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적인 언행을 삼가도록 하자는 약속을 함

① 예의

② 존중

③ 인신공격금지

④ 욕설금지

. 조정진행방식에 대한 합의

① 동일한 발언기회 및 시간

② 동일한 반론기회 및 시간

③ 발언순서결정

④ 참석 인원결정

⑤ Caucus 허용

.. 발언의 순서, 기회, 시간 등에 대한 합의, 발언순서 정하기 규칙 설정, 상호 동일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가짐, 상대의 주장에 대한 동일한 반론의 기회와 시간을 가짐,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데 대한 합의, 전체진행과정에 대한 합의, 협상참석자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룸

.. Caucus란 조정과정 중 조정자의 판단에 따라, 또는 개별 갈등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자와 개별 갈등당사자간 회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 조정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갈등당사자들이 요청할 수 있음. 어느 경우이든 Caucus를 조정자로부터 요청받지 않은 갈등상대나 Caucus를 요청하지 않은 갈등당사자는 그 Caucus에 참석할 수 없음. Caucus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Caucus에 참석한 갈등당사자의 허락이 없이는 조정과정에서나 갈등상대와의 Caucus에서 알려주어서는 안 됨. 조정자는 Causcus를 A라고 하는 갈등당사자와 가졌으면, B 라고 하는 갈등당사자와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횟수만큼의 Caucus를 가져야 함.

. 메 모

.. 조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조정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메모를 할 수 있음을 주지. 따라서 조정과정 중 조정자가 메모하는 것은 갈등당사자 진술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긍정 또는 부정 의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진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것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함.

. 조정을 위한 한 Session 시간과 총 Session 회수

.. 시간에 대한 압력을 주지 말 것

.. 전체 조정과정을 소화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공지는 필요 없으며, 갈등이 해소될 때 까지 계속됨을 인식시켜야 함

.. 한번에 몇 시간할 것인지, 또는 쉬는 시간은 몇 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예: 대체로, 한 session을 8 시간으로 보며, 8시간 내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

.. 따라서, 조정 시작 전, 당일에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을 정하여 다시 만날 것임에 대한 동의를 구함

.. 한 session 내에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갈등당사자들이 헤어지기 전에 다음 만날 날짜,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약속하여 둠(예: 쉬는 시간과 조정의 지속시간은 조정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정함. 미리 정하게 되면 시간에 쫓기거나 맥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음)

. 증거자료 활용방법

.. 각각의 갈등당사자들은 자신의 발언 시간이나 반론시간에 어떠한 증거자료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림. 법정과는 다르게 어떤 증거는 되고 어떤 것은 아니 되는 규칙은 없으며, 갈등상대방도 함께 그 자료를 볼 수 있음도 고지함

.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합의

..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의견차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서 결국은 대안을 개발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에 합의

. 합의안 작성에 대한 정보제공

.. 갈등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은 정리되어 갈등당사자들과 조정자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나누어가질 것임을 고지

.. 만약, 합의안이 다소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공증을 받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고, 당사자들 모두 공증을 원한다면 이 사실을 사전약속 내용에 포함하고, 원하지 않으면, 합의안 작성 후 다시 논의토록 함

.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작성 및 합의서 분배

<첨부27>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업무 확인서(행정지원팀 작성자료)

1.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1-1.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관련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한탄강댐건설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갈등조정소위원회‘)’를 둔다.

1-2.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이하 준비단)’에서 활동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진승·김경·박수선·이선우·이영희·허상수 위원 등 6인으로 하고,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진승 위원이 된다.

1-3. 준비단은 본 업무 확인서 후단의 서명란에 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는 때에 해체한다.

1-4.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 관련당사자 대표들간에 합의를 도출하여 대통령에게 결과보고를 완료한 때, 또는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에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해 본회의가 심의를 완료한 때까지 존속한다.

2.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업무

2-1.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이하 ’한탄강댐조정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2. 한탄강댐조정회의는 한탄강댐 건설 찬성주민, 건설교통부, 한탄강댐 건설 반대주민, 환경단체 등 4대 관련당사자 그룹이 선정한 대표자들과 갈등조정소위원회의 박수선·이선우·허상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 건설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같은 수의 대표자가 한탄강댐조정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찬성측과 반대측 대표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2-4. 갈등조정소위원회는 박수선·이선우·허상수 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위원’의 자격으로 한탄강댐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갈등조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정위원을 대표하는 팀장은 허상수 위원이 된다.

2-5. 갈등조정소위원회는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련당사자 대표들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6. 갈등조정소위원회가 수행할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3자로서 관련당사자 대표들간의 의사소통 촉진과 한탄강댐조정회의의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대하여 관련당사자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을 의미한다.

2-7. 갈등조정소위원회가 수행할 조정의 범위는 한탄강댐 건설 여부에 국한하지 않으며,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 제시되는 사항은 모두 조정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8.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합의회의나 공론조사 등 특정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한탄강댐조정회의에 별도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9. 갈등조정소위원회는 관련당사자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한탄강댐조정회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야 한다.

2-10.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의 원칙, 조정회의 진행방식, 한탄강댐조정회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합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당사자 대표들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 이에 근거하여 조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11. 갈등조정소위원회는 1-4에서 정한 활동기간에 불구하고 가급적 2004년 8월까지 한탄강댐문제가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업무수행원칙

3-1. 갈등조정소위원회는 공권력이나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관련당사자 대표들에게 대안을 수용하고 합의할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2.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조정회의의 동의를 얻어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의 발언을 녹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3.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의 논의 및 결정사항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3-2에 의한 녹취록을 포함한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의 논의·결정사항의 공개여부와 내용, 방식 등은 한탄강댐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3-4. 조정위원은 한탄강댐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3-5.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 대안검토 필요성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안검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은 대안검토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3-6. 한탄강댐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권한은 한탄강댐조정회의에 참여하는 관련당사자 대표들이 가진다. 다만,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갈등조정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3-7. 기타 한탄강댐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탄강댐조정회의의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4-1.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남북공동협력사업에 따른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계획 철회 등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조정회의의 운영을 스스로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조정회의에서의 조정에 의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활동의 중단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회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4. 5. 18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 진 승 (인)

위 원 김 경 (인)

박 수 선 (인)

이 선 우 (인)

이 영 희 (인)

허 상 수 (인)

<부록3>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보도자료(4월29일 지역신문에 배포됨)

한탄강댐을 둘러싼 갈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정에 나서

.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의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단장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5월 1일, 한탄강댐 건설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포천과 연천, 철원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 연천군 군민회관과 철원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은 이달 중에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찬성주민 대표와 반대주민 대표, 건설교통부와 환경단체 관계자가 함께 만나 댐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 이들 관련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그 결과가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하는 것이든 백지화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탄강댐은 1996년과 1998년, 1999년에 걸쳐 파주·문산·동두천·포천·연천·철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를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댐으로,

. 댐 건설계획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2001년부터 포천·연천·철원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주민들간에도 찬성과 반대여론이 갈라져 있는 상태이다.

. 2003년 12월 19일 관광진흥대책 보고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강원도 의회의원으로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관련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맡아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 위한 절차를 구상해 왔으며, 앞으로 건교부와 환경단체, 찬·반 주민대표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으로 있다.

.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은 그러나 관련당사자들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여기에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 찬반 주민들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와 수몰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에 얽힌 금전적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댐 건설 여부는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록4>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설명회 개최결과

정부·환경단체 설명회 개최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04. 4. 29(목), 10:00~11:30, 지속위 제2회의실

. 참석자: 박수선, 이영희, 허상수 위원(갈등관리준비단), 유제철, 엄두용(행정지원팀), 소준섭 수질개선기획단 사업지원부장, 홍형표 건교부 수자원개발과장, 수개단 강명수사무관, 건교부 이우제사무관(건교부), 황병철 처장, 김한중 과장(수자원공사),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환경단체), 박진우·김수영 행정관(참관)

2)안건: 한탄강댐 갈등조정프로세스 설명, 정부와 환경단체측 대표자 선정 요청

3) 토의 및 결정사항

.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설명

.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의 구성 설명

.. 댐건설 찬성·반대주민, 환경단체, 정부의 대표자(2~3명)로 구성

.. 대표자는 관련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시로 협의 가능할 것

. 프로세스 참여의 의미와 참여에 따른 이점, 앞으로의 조정절차 및 일정 등 설명

. 질의응답을 통한 확인사항

.. 가급적 8월말까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속위 본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자문

.. 주민대표 선정시 대표성 확보에 유의하기로 함

. 정부·환경단체에 대한 준비단의 요청사항

..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창구는 대표자회의로 일원화하며, 주민과의 이면 접촉 및 홍보활동 등은 자제할 것

.. 5월11일까지 정부와 환경단체 대표자를 추천해줄 것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1) 한탄강댐 찬성주민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04. 5. 1(토) 19:00~20:40, 연천군민회관

. 참석자: 김경·이선우·허상수 위원(갈등관리준비단), 유제철, 김남웅, 김규원(행정지원팀), 수몰민종합대책위 김준문 위원장, 홍순각 부위원장, 수몰민대책위 이수인 위원장, 제1대책위 최해선 부위원장

등 250여명(찬성주민)

※ 연천군 의회의 요청으로 의회를 방문(16:30~17:00), 의장(서영웅), 부의장(김광철), 이원근·김창석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향후 조정과정에서 지속위와 의회간에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함

2) 한탄강댐 반대주민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04. 5. 1(토) 19:00~21:30, 철원군청

. 참석자: 정진승 단장, 박수선·이영희 위원(갈등관리준비단), 남재우, 엄두용, 박두호, 공지아(행정지원팀), 철원대책위 장진혁위원장, 연철포럼 최의순기획실장, 포천대책위 이병욱위원장 등 300여명(반대주민)

3) 주민 설명내용

. 준비단 위원소개 및 지속위의 지위·역할 등 설명

. 그간의 추진경과 설명

. 앞으로의 갈등조정절차의 개요,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구성, 합의절차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조정프로세스 설명

. 5.11일까지 주민대표 선정요청 등

4) 주민 발언 및 질의사항

. 찬성주민(연천군민회관)

.. 한탄강댐 건설문제의 표류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의 고통 호소 및 조속한 결론 촉구

.. 환경단체의 관련당사자 적격성문제 제기

.. 관련당사자 대표선정에 있어 수몰지역 면적비율에 의한 지역적 고려 요청

.. 이제 와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기보다 지속위가 알아서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을 주장

※ 반대주민 설명회에 비해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댐을 건설하든 백지화하든 결론이 빨리 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았음

. 반대주민(철원군청대회의실)

.. 한탄강댐건설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문제제기

... 한탄강댐문제는 주민간 갈등사안이 아님. 댐건설과정의 부당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

.. 관련당사자회의 구성의 사전조건으로 수공과 시공사의 연천현지사무소 철수 주장

..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속위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 다수이므로 관련당사자의 수도 반대측이 많아야 함

.. 댐 건설시 발생할 주민들의 불이익·고통 호소와 댐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음

.. 지속위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될까 의문 제기 등

※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갔으며, 설명회 도중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만 자리를 뜨자는 선동과 진행방해를 시도하는 주민도 있었음

〈부록5〉 한탄강댐 갈등조정절차 주민설명자료, 리플렛, 사진자료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활동 사진>

한탄강유역 현지답사(2004.3.20)

한탄강유역 현지답사(2004.3.20)

준비단 제8차 회의-찬성측 주민의견 청취(2004.4.6)

준비단 제8차 회의-반대측 주민의견 청취(2004.4.6)

준비단 제10차 회의(2004.4.20)

준비단 제11차 회의(2004.4.27)

한탄강댐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주민설명회-연천군민회관(2004.5.1)

한탄강댐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주민설명회-철원군청 대회의실(2004.5.1)

<부록6> 한탄강댐관련 자료목록 (지속위 자료실 비치)

1) 한탄강댐 자료모음집
.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요약본) (2003.7)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토론회 녹취록(2002.12)
. 한탄강댐 보도관련 기사 (2002, 2003년 / 동아, 중앙, 조선, 한겨레)

2) 한탄강댐 자료모음집2 -정부기관 작성자료
. 건설교통부 자료
.. 한탄강댐경제성분석 결과 (2002.3)
.. 임진강유역 수해대책 대안비교 (2002.3)
.. 한탄강댐 현황 (2004.2)
.. 한탄강댐 추진현황 및 참고자료(질의답변자료) (2004.3)
.. 한탄강댐 설명포스터 (2004.4)
. 환경부 자료
.. 탄강댐 관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 -홍수, 환경분야 (2002.12)
.. 한탄강댐 종합토론회 관련 주민·관계기관 회의결과 (2003.1)
. 강원도 자료
.. 한탄강댐 건설문제와 관련된 강원도의 입장 (2003.8)
.. 한탄강댐 건설논란 관련 주요쟁점 및 대응논리 (2004.2)

3) 한탄강댐 자료모음집3 - 대책위 · 시민단체작성자료, 언론보도 내용
. 반대주민대책위 · 시민단체 관련 자료
.. 보도자료, 댐건설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2000.11)
..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한탄강네트워크의 입장 (2001.9)
.. 한탄강댐 계획의 문제점, 예산삭감요구자료 (2002)
.. 댐반대국민행동 보도자료 - 한탄강댐 불법추진을 고발한다 (2002.5)
.. 소양강댐의 연간 편익분석자료, 강원도의회 (2002)
.. 성명서, 한탄강댐 타당성 조작해놓고 환경대책비용 투입 터무니없어 (2003)
.. '생명을 위한 강' 대회에서 채택한 한탄강댐 반대 결의문 (2003)
.. 한탄강댐 건설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인수위 건의서 (2003.1)
.. 한탄강댐 건설 계획의 취소와 그에 따른 대안 (2003.1)
.. 댐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물정책의 필요성, 환경연합 (2003.2)
.. 세계댐위원회 보고서, 댐은 진정 이로운가 (2003)
..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최종협의내용 분석 (2003.7)

.. 한탄강댐반대 기자회견 자료집 (2003.8)
..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최종의견서 (2003.9)
.. 한탄강댐 건설반대 3개군 대책위 활동경과 (2003.10)
.. 한탄강댐백지화 기자회견문 (2003.10)
..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자료 - 조작과 억지로 만든 한탄강댐 계획 철회하라 (2003.10)
.. 성명서, 조작과 억지로 만든 한탄강댐 계획 철회하라 (2003.10)
.. 댐건설 백지화 대정부건의문 및 국회의원 서명부 (2003.12)
.. 리플렛,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범 연천군민 투쟁결의대회(2004.4)

. 찬성주민대책위 관련 자료
.. 주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2003.7)
.. 주민민원에 대한 수공의 회신 (2003.7)
.. 주민민원에 대한 수공의 회신 (2003.8)
.. 건의서, 설명회와 생계대책,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민원 (2003.9)
.. 한탄강댐 설명회개최 (2003.9)
.. 건의서, 연천군수님께 드리는 글 (2003.11)
.. 대책위 건의서에 대한 연천군의 회신 (2003.11)
.. 성명서, 한탄강댐은 강원도에 건설되는가? (2003.12)
.. 성명서, 한탄강댐의 진실 (2004.3)
.. 건의서, 한탄강댐 수몰민은 분노한다 (2004.5)

. 한탄강댐 관련 언론보도 내용 (2004, 지역신문)

4)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발췌 자료모음집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001.7)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Ⅰ권) (2002.7)
. 한탄강댐 환경경향평가서 (보완Ⅱ권) (2002.7)
. 한탄강댐 환경경향평가서 (재보완) (2002.12)
. 한탄강댐 환경경향평가서 (추가보완) (2003.4)

5) 동강댐 자료모음집
. 정책토론회 자료집 - 동강, 어떻게 할 것인가? (1999.3)
. 심포지움 자료집 - 댐건설, 문제점과 21세기 대안 (1999.11)
. 시민의 승리, 동감댐 백지화 (2000.6)
. 동강댐 공동조사단 보고대회 (2000.6)
. 동강보전 · 관리 기본계획(안) (2001.8)

6) 별책자료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001.7)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본보고서), (2001.12)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Ⅰ권), (2002.7)

.. 한탄강댐 환경경향평가서 (보완Ⅱ권), (2002.7)

.. 한탄강댐 환경경향평가서 (재보완), (2002.12)

.. 한탄강댐 환경경향평가서 (추가보완), (2003.4)

. 일본전국댐호 이용시설 · 이용현황 / 수공 (2001.12)

. 한국의 댐 / 수공(2002.9)

. 미국의 댐지역 활성화 / 수공(2002.12)

. 댐계획법과 수자원 현안 / 최석범 (2003.1)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명단>

.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 단장

... 정진승 지속위 위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위원

... 허상수 지속위 위원(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 김 경 지속위 갈등예방·해결정책전문위원회 위원(Accord 21 상임고문)

... 이선우 지속위 갈등예방·해결정책전문위원회 위원(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이영희 지속위 갈등예방·해결정책전문위원회 위원(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박수선 지속위 갈등예방·해결정책전문위원회 위원(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 센터 소장)

. 행정지원팀(지속위 기획운영실)

.. 남재우 기획운영실장

.. 유제철 갈등관리프로세스팀장

.. 엄두용 물·국토·자연정책팀원

.. 권기태 갈등관리프로세스팀원